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대만

2013. 12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본 보고서는 대만 관세제도의 대부분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부족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세제에 변화가 빈번하여, 가장 최신의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대만의 관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임을 밝히며,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만 관무서의 출판물 및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을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 목 차

I. 개 관	9
1. 일반 개황	9
2. 경제 개황	11
가. 대만의 주요 경제지표	11
나. 대만의 수출입 동향	12
다. 대만의 외국인 투자 동향	15
3. 우리나라와 대만의 교역 관계	18
4. 대만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21
5. 대만의 AEO 제도	25
II.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28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4」	28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31
가. 수입 정책(Import policies)	32
나. 수입 제한(Import controls)	32
다.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	33
라. 기타	33
III. 대만의 통관환경	34
1. 통관행정 개요	34
가. 통관행정 조직	34
나. 각종 수입 허가제도	36

다. 수입제한제도	41
라. 중국제품에 적용되는 수입 규제	45
마. 관세율체계	46
바. 내국세제도	51
사. 관세의 감면·면제·유예제도	55
2. 수입통관 절차	59
3. 수출통관 절차	63
IV.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65
1. 수입신고 전 준비	66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66
나. 업무상 유의점	66
2. 수입신고 및 세관 심사	69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69
나. 업무상 유의점	71
3. 세금 납부 및 물품 반출	71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1
나. 업무상 유의점	72
4. 수출 및 환급	74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4
나. 업무상 유의점	75
참고문헌	77
부 록	78
부록 I. 비즈니스 팁	78
부록 II. 주요 유관기관 정보	81
부록 III. 대만 관세법	84

부록 IV. 관세 환급신고서 양식.....	114
부록 V. 수입신고서 양식.....	115

## 표목차

〈표 I -1〉 대만의 주요 경제지표	12
〈표 I -2〉 2012년 대만의 수출품목	13
〈표 I -3〉 2012년 대만의 주요 수입품목	14
〈표 I -4〉 2012년 대만의 국별 수출입 동향	14
〈표 I -5〉 대만의 해외 직접투자(FDI) 유입 동향	15
〈표 I -6〉 최근 우리나라의 對대만 투자 현황	17
〈표 I -7〉 우리나라의 對대만 업종별 투자 현황	17
〈표 I -8〉 최근 對대만 교역량 및 무역수지	18
〈표 I -9〉 최근 對대만 10대 수입품목	19
〈표 I -10〉 최근 對대만 10대 수출품목	20
〈표 I -11〉 2012년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입 국가 순위	21
〈표 I -12〉 대만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24
〈표 II -1〉 「Doing Business 2014」 대만의 무역분야 순위 비교	29
〈표 II -2〉 대만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	29
〈표 II -3〉 대만의 수출입 시 필요 서류	30
〈표 III -1〉 BSMI 인증 마크, 라벨 종류 및 해당 제품군	38
〈표 III -2〉 2013년 농산품 품목별 할당량	43
〈표 III -3〉 2012년 관세적용범위	48
〈표 III -4〉 2012년 농산물 · 비농산물의 관세분포	49
〈표 III -5〉 품목별 관세율	49
〈표 III -6〉 품목별 물품세	52
〈표 III -7〉 물품 및 서비스별 부가세율 현황	53
〈표 IV -1〉 대만 통관 절차별 유의사항	65

## 그림목차

〈그림 Ⅲ-1〉 대만 관무서 조직도.....	34
〈그림 Ⅲ-2〉 대만 관세율 분류 한국어 예시.....	47
〈그림 Ⅲ-3〉 대만 관세율 분류 .....	47
〈그림 Ⅲ-4〉 대만 관무서 홈페이지.....	50
〈그림 Ⅲ-5〉 대만의 수입통관 절차.....	59
〈그림 Ⅲ-6〉 대만의 수출통관 절차.....	64



# I. 개 관

## 1. 일반 개황

- 정식 국가명칭은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며 국제 행사에서는 ‘Chinese Taipei’를 사용하고 있음
- 2013년 9월 기준으로 총인구는 약 2,300만명이며 민족은 민남인(74%), 외성인(12%), 객가인(12%) 그리고 원주민(2%)으로 구성되어 있음
  - 수도는 타이베이(Taipei)로 약 265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도시로 인구 390만 명의 신베이(New Taipei), 277만명의 가오슝 (Kaosiung), 265만명의 타이중(Taichung) 그리고 187만명의 타이난(Tainan) 등이 있음
- 대만의 국토 면적은 36,190km<sup>2</sup>으로 남한의 3분의 1배이며, 동남아에 위치해 있어 아열대의 동북 몬순 기후권에 속하고 있음
  -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구성되어있으며 경작비율은 24%정도임
- 행정구역은 2개의 직할시 및 22개의 현 및 시로 이루어져 있음
  - 행정구역은 크게 대만성과 복건성 그리고 직할시로 나뉨
  - 현재 3시, 14현, 5개 직할시로 편성되었음
- 대만은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민남어, 객가어 및 원주민어 또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로는 불교(35%)를 가장 많이 신봉함
  - 불교를 제외하고 도교(33%), 기독교(2.6%), 천주교(1.3%), 회교(0.2%) 등을 신봉하고 있음

- 대만은 입헌민주공화국으로 5권 분립(행정, 입법, 사법, 고시, 검찰의 분립)을 시행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 복수정당제를 도입하고 있음
- 2012년 5월 기준으로 총 23개국과 수교하고 있으며 51개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음
- 1911년 국민당이 중화민국을 건립하였으나 공산당과 내전이 발발하여 1949년 국민당은 대만으로 넘어와 중화민국을 계승함
- 2008년 대만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국과 우호적 관계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반기마다 양안<sup>1)</sup> 회담을 개최하여 경제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음
  - 2010년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이 체결되어 양안의 자유무역화가 진행되고 있음
  - 또한 2012년 제8차 양안회담에서 해협양안투자보장 및 촉진협의를 체결하여 투자자들의 권익보장을 제도화 함
- 1948년 한국과 수교하였으나 1992년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과 단교하게 되었음
- 1993년 7월에 한국과 대만은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측의 항공 정기노선은 2005년에 재개됨
- 대만은 한국의 주요 무역교역국으로서 1991년에는 한국의 12대 무역교역국이었으나 2011년에는 한국의 6대 무역교역국이 될 정도로 무역량이 증가함
- 2012년 기준, 대만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1%, 공업은 28.9%, 농업은 1.8%로 3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

---

1)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양안관계 'Cross-Strait relations'라고 함

- 1980년대 중반까지는 공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대등하였으나 1986년부터 대만달러 (NT) 환율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체들이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공업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함
- 1990년대 후반 들어 현재 대만의 대표적 산업인 IT산업이 급부상하여 공업 비중의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었음

□ 대만의 화폐 단위는 NT(신대만달러, New Taiwan Dollar)이며 2012년 기준으로 미국 1 달러는 29.61NT임

## 2. 경제 개황

### 가. 대만의 주요 경제지표

- 2011년 대만정부는 수출 및 민간소비의 증가에 따라 높은 경제성장을 예상하였으나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4.03%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그보다 더 낮은 1.3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1년 8월 이후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로 인한 미국과 유럽시장 수출 감소 및 한·미, 한·EU FTA체결로 인한 금속 기계, 석유화학 등의 품목에서 대만 제품의 수출 감소가 주영향임
- 대만은 2010년 외자 유입의 지속과 2011년 미국 및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은 30대만달러를 넘었으나 안정세를 찾아 2012년 12월 기준으로 29.61대만달러를 유지함
- 2011년 ECFA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발효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대만의 총수출 규모는 사상 최초로 3,0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2012년 실질수출액은 약 3,012억달러임

- IMF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외 수출과 민간투자가 증가함으로써 2013년 GDP가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였음
- 대만의 주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정권교체로 인한 경기부흥정책 실시는 대만의 수출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함

〈표 I-1〉 대만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9	2010	2011	2012
명목 GDP(억달러)	3,948	4,440	4,967	4,804*
경제성장률(%)	-1.93	10.82	4.03	1.32
1인당 GDP(달러)	16,353	18,603	20,246	20,386
물가상승률(%)	-0.87	0.96	1.42	1.93
실업률(%)	4.14	5.85	5.21	4.24
환율(NT달러/달러)	32.960	32.030	30.368	29.61
수출(억달러)	2,036.7	2,746.4	3,082.9	3,012
수입(억달러)	1,743.7	2,514.0	2,816.1	2,705
무역수지(억달러)	293.0	232.5	266.9	307.1

주: \*는 추정치

자료: 대만행정원 주계처, 중화경제연구원,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KOTRA

## 나. 대만의 수출입 동향

- 대만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석유 및 역청유, 액정 디바이스, 전화기 등이며 IT 강국인 만큼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
  - 대만 행정원에 따르면 대만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상품 총액이 전체 무역규모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I -2〉 2012년 대만의 수출품목

(단위: 백만대만달러)

순위	2011			2012년		
	상품 분류	품 목	금 액	상품 분류	품 목	금 액
1	85류	전자집적회로	1,629,104	85류	전자집적회로	1,710,592
2	90류	액정 디바이스	507,885	27류	석유, 역청유(원유 제외)	621,847
3	27류	석유, 역청유(원유 제외)	498,312	90류	액정 디바이스	495,278
4	85류	전화기	414,959	85류	전화기	313,173
5	85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299,135	85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243,618
6	85류	인쇄회로	180,673	85류	인쇄회로	175,878
7	85류	디스크, 테이프	179,980	85류	디스크, 테이프	169,792
8	84류	8469류, 8472류 기계전용 부품	178,862	84류	8469류, 8472류 기계전용 부품	154,212
9	84류	자동화자료처리기계	129,645	39류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것의 무수물 등	122,112
10	39류	폴리메테르	122,768	39류	폴리메테르	113,961

자료: 대만 관무서 통계

- 2011년에 비해 2012년에는 석유, 역청유 및 전자집적회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액정 디바이스, 전화기,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인쇄회로 등 대부분 수출품목의 수출액이 감소하였음
- 대만이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석유 및 역청유, 전자집적회로, 석유가스, 반도체 및 LCD 제작용품 등임
  - 대만은 에너지 자원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석유 및 원유를 비롯한 연료의 수입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자제품의 수출이 높기 때문에 원자재 및 중간재 전자제품 또한 높은 수입률을 보임

〈표 I-3〉 2012년 대만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대만달러)

순위	2011년			2012년		
	상품 분류	품 목	금 액	상품 분류	품 목	금 액
1	85류	전자집적회로	1,991,510	27류	석유, 역청유(원유)	1,055,493
2	27류	석유, 역청유(원유)	892,538	85류	전자집적회로	933,884
3	27류	석유, 역청유(원유제외)	382,494	27류	석유, 역청유(원유제외)	429,132
4	84류	반도체 및 LCD 제조장비 및 부품	315,732	27류	석유가스, 가스상 탄화수소	308,970
5	27류	석유가스, 가스상 탄화수소	275,576	84류	반도체 및 LCD 제조장비 및 부품	299,747
6	27류	석탄, 연탄, 유사 고형원료	263,085	27류	석탄, 연탄, 유사 고형원료	236,152
7	29류	환식 탄화수소	139,203	85류	전화기	127,074
8	74류	정제 동과 동 합금	124,113	29류	환식 탄화수소	115,548
9	85류	전화기	112,940	74류	정제 동과 동 합금	105,406
10	38류	전자공업용 화학원소와 화합물	110,744	84류	자동화자료처리기계	90,838

자료: 대만 관무서 통계

〈표 I-4〉 2012년 대만의 국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대만달러)

순위	수 출		수 입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1	중국	2,384,894	일본	1,411,017
2	홍콩	1,120,788	중국	1,213,056
3	미국	974,725	미국	700,092
4	싱가포르	593,572	한국	447,092
5	일본	561,164	사우디아라비아	438,209
6	한국	349,951	오스트레일리아	275,652
7	필리핀	262,166	쿠웨이트	255,370
8	베트남	249,191	싱가포르	240,567
9	태국	194,090	말레이시아	232,658
10	말레이시아	193,798	독일	230,014

자료: 대만 관무서 통계

- 2012년, 대만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 그 외에 홍콩, 미국, 싱가포르 등의 순이었으며, 반면 주요 수입상대국은 일본, 중국, 미국, 한국 등으로 조사됨
  - 아세안 6개국에 대한 수출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대만에서 아세안 6개 국가로의 수출 교역이 전체 교역량의 약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다. 대만의 외국인 투자 동향

- 2007년 금융계의 투자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금액이 150억달러를 넘었으나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및 2011년 미국 및 유럽의 경제 불황의 여파로 2007년에 비해 낮은 투자율을 나타내고 있음
- 2010년 중국과 ECFA 체결에 따라 대만의 투자 메리트가 상승하였고 또한 양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됨에 따라 2011년에는 4,955백만달러로 투자가 증가하였음
-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일본, 홍콩 등이 對대만 주요 투자 대상국이며 특히 이들 국가의 투자금액이 대만 전체 외국인 투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영국은 특히 금융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300개 정도의 기업이 대만에 진출해 있으며 네덜란드는 전자제품, 금융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

〈표 I -5〉 대만의 해외 직접투자(FDI) 유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투자유입액	8,237	4,798	3,812	4,955	5,559

자료: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회

- 대만의 외국인 직접투자 주요 업종은 금융업, 도소매업, 전자부품 제조업이며 상위 10대 외국 투자기업 중 대부분이 일본 기업임
  - 일본 기업의 대부분은 전자제품 제조업체이며 우리나라 그룹인 삼성 또한 3위권에

### 올라있음

- 대만의 외국인 투자는 2011년에 비해 12.18% 상승한 5,559백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 불황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대만 행정위는 2010년, 대만 투자서비스센터(Invest Taiwan Service Center)를 설립하여 외국 투자자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2011년에는 일본기업을 전담하는 일본데스크 또한 설치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음
-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의 중국 투자가 총 138건, 328백만달러로 지난해 건수 대비 35.29% 그리고 총투자량 대비 650.11%로 크게 상승했다고 함
  - 2012년의 중국 투자 증가 이유는 중국 자본개방에 따른 중국은행 및 교통은행의 대만 내 설립 및 양안 협력에 따른 투자 환경의 편의성 때문임
-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對대만 투자는 대만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거나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함
- 주요 산업분야에서 대만은 한국과 경쟁관계이며 한국과 대만 간 반도체, 디스플레이기업들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음
  - 특히 대만은 1960년대 후반 외국계 기업의 후공정 패키징 공장 설립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IC설계분야 세계 시장점유율 2위, IC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5년, LCD장비업체가 역대 최대 규모인 4천만달러를 투자하여 대만에 포토마스크 공장을 설립한 것을 기점으로 2011년 금융업체가 1천만달러를 투자하여 대만 내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I-6〉 최근 우리나라의 對대만 투자 현황

(단위: 건, 개, 천달러)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9년	38	10	29,753	56	24,612
2010년	43	17	13,915	47	12,128
2011년	44	17	47,355	49	20,944
2012년	38	8	9,548	47	8,701

주: 법인은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함(자사, 지점제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2011년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던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2012년에는 순위권 밖이었으며 2012년에는 새롭게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음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1,070천달러로 건수 대비 투자금액이 높은 편임
- 2012년 한국의 對대만 투자 신고건수 및 금액(공동투자, 증액투자 포함)은 총 38건, 9,548천달러, 신규법인 수는 8개임
  - 투자금액은 8,701천달러 송금횟수는 47회임

〈표 I-7〉 우리나라의 對대만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천달러, 건)

2012 순위	투자 업종	2011년		2012년	
		투자금액	신고건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1	제조업	7,902	14	4,226	9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519	6	2,749	11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1,070	1
4	도매 및 소매업	1,196	8	389	6
5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177	12	185	9

주: 법인은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함(자사, 지점제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3. 우리나라와 대만의 교역 관계

- 대만은 한국과의 산업 유사성으로 주요 수출입 품목이 비슷하여 상호 비교우위 품목을 위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수출입이 증가하였으며 유럽 경제위기 전 2011년에는 활발한 교역에 힘입어 양국 간 무역액이 사상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하였음
- 2008년, 2009년도의 경제 불황이 회복되면서 한국의 對대만 수출입은 2010년, 2011년에 모두 다시 증가하였음
- 그러나 미국 및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가 2012년까지 이어지면서 양국의 수출 및 수입 그리고 무역수지 또한 타격을 받음
- 대만경제연구원은 2011년 8월 이후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 및 한·미, 한·EU FTA체결로 금속기계 및 섬유화학 등 제품의 對한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함
- 수출은 전년 대비 18.6%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약 4.6% 감소하였으나 무역수지는 803백만달러로 흑자이며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한국의 무역 흑자국임

〈표 I-8〉 최근 對대만 교역량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전년 대비 증감률)	11,462 (-12.0)	9,501 (-17.1)	14,830 (56.1)	18,206 (22.8)	14,815 (-18.6)
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	10,643 (6.8)	9,851 (-7.4)	13,647 (38.5)	14,694 (7.7)	14,012 (-4.6)
무역수지	819	-350	1,183	3,512	803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對대만 제1위 수입품목이자 수출품목으로 양국의 반도체산업은 경쟁관계이자 상당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 밖에 화학연료를 비롯하여 철강판과 기구부품 또한 우리나라 對대만의 10대 교역 품목임
- 2012년 기준 한국의 對대만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기구부품, 컴퓨터, 철강판 등이 이며 그 밖에 플라스틱제품, 석유화학제품, 유리제품 등이 있음
- 2011년 77.6%의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였던 기초유분은 2012년에는 10대 수입품목에 해당하지 못했으며 유리제품의 수입은 61.7%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컴퓨터는 전년 대비 57%의 큰 수입 감소율을 보였으며 철강판과 기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 역시 감소하였음

〈표 I-9〉 최근 對대만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2011년			2012년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계	14,694	7.7	총계	14,012	-4.6
1	반도체	7,262	7.5	반도체	8,114	11.7
2	컴퓨터	1,431	2.9	기구부품	757	12.4
3	기구부품	673	11.4	컴퓨터	616	-57
4	철강판	611	21.4	철강판	420	-31.2
5	무선통신기기	320	-21.6	플라스틱제품	324	22.9
6	플라스틱제품	263	24.2	기타석유화학제품	227	-10.3
7	기타석유화학제품	253	9	유리제품	211	61.7
8	기타중전(heavy electric)기기	252	-1.6	정밀화학원료	161	-7.4
9	기초유분	206	77.6	합성수지	159	-1.9
10	정밀화학원료	174	9.3	동제품	156	4.6

주: MI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2012년 기준 한국의 對대만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기초유분, 석유화학 중간 원료 등이며 그밖에 철강판, 유리,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이 있음
- 2011년 대비 유리제품의 수출이 89.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도체, 석유화학 중간원료와 정밀화학원료의 수입이 감소하였음
  - 2011년에 528.6%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던 석유제품의 경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2.9%의 수출 감소로 인하여 큰 차이를 보임

〈표 1-10〉 최근 對대만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2011년			2012년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계	18,206	22.8	총계	14,815	-18.6
1	반도체	5,436	15	반도체	3,578	-34.2
2	석유제품	2,307	528.6	석유제품	2,240	-2.9
3	기초유분	1,153	22.8	기초유분	1,381	19.8
4	석유화학중간원료	852	46.2	석유화학중간원료	532	-37.6
5	정밀화학원료	707	54.1	철강판	525	4.8
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522	55.3	정밀화학원료	406	-42.6
7	철강판	501	-24.0	유리제품	348	89.5
8	컴퓨터	453	-11.6	반도체제조용장비	311	-22.2
9	반도체제조용장비	400	-3.8	금은 및 백금	275	-17.9
10	금은 및 백금	335	0.8	합성수지	264	-4.4

주: MI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2012년 기준으로 대만은 우리나라의 제7위의 수출상대국, 제11위의 수입상대국이며 1991년, 대만이 한국의 12대 무역교역국으로서 교역규모가 31억달러이었던 것에 비하면 교역규모가 크게 상승하였음

- 반면, 2011년 대만과 일본 간 투자협정 체결로 인한 양국 간 투자 증가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와 IT에서 일본과 한국이 경합 관계에 있어 대만의 한국 투자 감소가 우려될 수 있음

〈표 I -11〉 2012년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입 국가 순위

(단위: 백만달러)

수 출			수 입		
순위	국가	수출금액	순위	국가	수입금액
1	중국	134,323	1	중국	80,785
2	미국	58,525	2	일본	64,363
3	일본	38,796	3	미국	43,341
4	홍콩	32,606	4	사우디아라비아	39,707
5	싱가포르	22,888	5	카타르	25,505
6	베트남	15,946	6	호주	22,988
7	대만	14,815	7	쿠웨이트	18,297
8	인도네시아	13,955	8	독일	17,645
9	인도	11,922	9	인도네시아	15,676
10	러시아연방	11,097	11	대만	14,012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4. 대만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sup>2)</sup>

- 대만은 2010년 6월 중국과 ECFA 체결 후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3월부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FTA체결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EU, 인도, 필리핀과는 FTA 협상을 검토 중임

2) FTA 원산지 관련 국가별 자세한 규정은 <http://eweb.customs.gov.tw/ct.asp?xItem=42658&CtNode=12640>에서 확인

- 대만 · 파나마 FTA는 2004년 1월 발효되어 대만은 파나마의 방직, 소고기 등 전체 수입의 70%에 해당하는 6,200개 항목에 대해 면세하였으며 파나마는 대만의 보안장비, 화학 등 4,610개 항목에 대해 면세하였음<sup>3)</sup>
  
- 대만 · 과테말라 FTA는 2006년 7월 발효되었으며 과테말라는 설탕을 비롯하여 커피, 바나나 등 농산품 644개 항목에 대해 관세를 양허하고 대만은 농산품 477개 및 공업상품 3,509개 항목에 대한 관세를 양허함
  - 대만의 對과테말라 주요 수출품은 벤젠, 나프탈렌 등과 같은 자동차 용품이며 주요 수입품은 커피, 당밀, 자당 등의 농산품으로 특히 자동차 부품 및 커피 등의 농산품이 협정의 혜택을 크게 받음
  
- 대만 · 니카라과 FTA는 2007년 6월 발효되었으며 니카라과는 대만 제품 2,274개 항목에 대해, 대만은 니카라과 제품 5,797개 항목에 대해 관세를 철회함
  
- 대만,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는 3자 간 FTA를 체결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 발효되었음
  - 온두라스에 수출되는 대만 상품 3,881개 항목이 면세되고, 대만에 수출되는 온두라스 상품 6,135개 항목이 면세되며 발효 10년 후 온두라스 상품 93%, 대만 상품 70.3%가 관세가 철회될 예정임
  - 엘살바도르에 수출되는 대만 제품 3,590개 항목과 대만에 수출되는 엘살바도르 상품 5,688개 항목이 면세됨
  - 대만이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에 수출하는 상품 중 농산품(한약재료, 땅콩가루, 버섯류 등), 가공품(라면 등), 스포츠용품, 가전, 전자부품, 플라스틱 및 타이어 제품 등이 혜택을 입음
  
- 대만이 중국과 2010년 6월 체결한 ECFA의 조기자유화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을 통해 대만은 총 539개 품목에 대해 조기자유화를 양허받았고 중국은 267개

3) 대만 · 파나마 FTA관련 특혜관세 신청내용은 <http://eweb.customs.gov.tw/ct.asp?xItem=46461&ctNode=12882>에서 확인

항목에 대해 양허를 받았음

○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은 2011년 1월부터 발효되었음

- 한국의 對중국 수출 500대 품목 중 ECFA의 EHP 적용대상은 총 164개 품목이며 특히 그 중 석유화학·철강·전자의 품목군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으나 2012년까지는 그 효과가 미미한 편임
- 대만과 미국 간 무역투자협정(TIFA, Trade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협상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2007년에 잠정 중단되었으나 2013년 3월 재개됨
  - 2012년 5월, 대만 정부는 TIFA 회담 재개를 위해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려 하였으나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유보되었음
  - 2012년 7월, 대만 국회에서 락토파민이 허용된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였으며 락토파민 잔류허용치는 10ppb 이하임
- 대만 기업의 對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을 비롯한 미국, 유럽 간의 무역마찰이 예상되어 대만은 중남미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FTA협정을 통해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 속도가 빠르므로 대만은 해당 지역을 거점으로 세계로 진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특히 2012년 3월에 체결된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경제부는 멕시코를 2012년 주요 협력타겟에 포함시켰으며 대만 기업 및 멕시코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추진을 통해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임
- 대만과 싱가포르는 2011년부터 경제동반자협정(ASTEPA, 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on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시작함

- 싱가포르는 담배나 주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이 무관세이므로 대만은 서비스업의 시장 제한을 낮추는 데, 싱가포르는 대만의 석유화학·기계·전자제품의 관세면제에 주력할 예정임
- 대만과 인도는 2011년 MOU 체결 후 대만·인도 FTA 체결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간은 약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음
- 대만은 2013년 7월 뉴질랜드와 경제협력협정(ECA)를 체결하였으며 협정은 2014년 1월 발효 예정
  - 대만이 비수교국과 맺은 첫 경제협력 협정이자 처음으로 선진국과 맺은 완전한 자유무역협정 형식이라는 데 의미가 있음
- 뉴질랜드와의 ECA 발효 시 대만의 6,178개 공산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이며 특히 철강제품, 플라스틱제품, 자전거 등의 수혜가 가장 클 예정임
  - 농산품은 향후 12년에 걸쳐 무관세율을 차츰 적용할 예정임

〈표 I -12〉 대만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국가 및 내용
발효	파나마(2004년 1월) 과테말라(2006년 7월) 니카라과(2007년 6월) 엘살바도르(2008년 3월) 온두라스(2008년 3월 1일)
협상 진행	싱가포르(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체결 후 2011년부터 협상 개시) 중국(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체결) 뉴질랜드(2013년 경제협력협정, ECA체결)
검토	일본(2011년 투자보장협의 체결) 미국(2012년 무역투자협정, TIFA 통상회담 재개 합의) EU, 인도(FTA 체결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자료: WTO([www.wto.org](http://www.wto.org)), KITA(한국무역협회), FTA종합 지원 포털(<http://www.ftahub.go.kr/>)

- 대만은 2013년 현재 동북아 FTA와 관련해 중국, 일본 및 한국과 정식으로 협상하기를 희망함

## 5. 대만의 AEO 제도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무역 원활화 및 국제수출통제 기준 이행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도입됨
-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Safe Framework에 의해 권장되고 있는 제도이며 미국 세관보안제도인 C-TPAT에 상응함<sup>4)</sup>
  - AEO는 강제적인 제도가 아닌 민간업체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운영함
- 대만은 2006년부터 수출입업자를 대상으로 AEO를 시행하며 무역시스템(Authorized Trader System)에 AEO를 통합하기 시작함<sup>5)</sup>
- 대만 AEO는 AEO C(일반적인 AEO, 통관 절차 신속), AEO S(보안 및 안전)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AEO C 는 수출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AEO S는 수출 및 수입업자를 비롯하여 공급당사자(Supply Chain Stakeholder)를 포함함<sup>6)</sup>
- AEO 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AEO 지원신청을 한 후 SCSS(Supply Chain Security Specialist)에서 현장검증을 하며 그 결과를 AEO센터에서 마지막으로 검증한 후 인증을 허가함<sup>7)</sup>

---

4) EU, 일본, WCO SAFF Framework, WCO AEO 가이드라인은 대만 AEO 홈페이지 [http://aeo.customs.gov.tw/lea/PTL\\_LEA\\_102.aspx](http://aeo.customs.gov.tw/lea/PTL_LEA_102.aspx)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AEO 관련 법령은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G0350061>에서 참조

6) 대만 국내 AEO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안전 검사 품목과 검사기준에 대한 내용은 [http://aeo.customs.gov.tw/lea/PTL\\_LEA\\_101.aspx](http://aeo.customs.gov.tw/lea/PTL_LEA_101.aspx)에서 확인할 수 있음

7) AEO 신청 절차는 [http://aeo.customs.gov.tw/lea/PTL\\_LEA\\_201.aspx](http://aeo.customs.gov.tw/lea/PTL_LEA_201.aspx)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http://aeo.customs.gov.tw/lea/PTL\\_LEA\\_401.aspx](http://aeo.customs.gov.tw/lea/PTL_LEA_401.aspx)에서 확인할 수 있음

- AEO 인증업체는 대만 AEO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음<sup>8)</sup>
- 통관과 관련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뢰를 인정받은 기업은 관무서에서 AEO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AEO C는 일정한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음
  - 최소한의 무역량, 수출입 컴퓨터 시스템, 전자통관이 가능한 시스템, 부과된 벌금이 나 관세 납부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AEO S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음
  - AEO S 인증마크를 받은 후 통상 3년간의 통관요건을 준수했다는 기록과 건전한 재무상태, 적절한 안전 및 안보여건을 준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AEO C를 받을 수 있음
-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통관 간소화, 통관 절차 면제, 안보통제 신속화의 혜택을 받게 됨
  - AEO S 인증업체는 낮은 검사비를 납부하며 또한 관세를 매달 한 번씩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담보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음
  - AEO C 인증업체도 또한 가장 낮은 검사비를 납부하며 관세를 매달 한 번씩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담보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음
  - 또한 AEO C 인증업체는 통합적인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독창구를 통해 통관할 수 있음
- 대만관무서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AEO 우수공인 인증을 받은 업체는 총 518개로 AEO 일반인증 받은 업체가 346개,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가 172개임<sup>9)</sup>
- 각국은 국가 간의 AEO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로서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체결하고 있으며 중복적인 시험의 방지, 불필요한 규제 비용 절감, 교역을 위한 시장 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음

8) [http://aao.customs.gov.tw/aao/PTL\\_AEO\\_601.aspx](http://aao.customs.gov.tw/aao/PTL_AEO_601.aspx)

9) 주 타이베이 대표부

- 2010년 APEC 관세청장 회의에서 대만은 한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및 AEO MRA의 체결을 요청하며 세관협력 강화와 문안 서명을 위해 방한을 희망하였고, 한국은 AEO MRA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 중임
  
- 대만은 2012년 미국 세관과 MRA를 체결하여 양측 AEO 우수공인업체는 우선통관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sup>10)</sup>
  - 대만 관무서에 따르면 대만과 미국의 MRA는 대만이 타국과 체결한 첫 MRA임
  - 대만의 안전인증을 받은 AEO 우수공인업체의 대미국 수출은 157억달러로 대만과 미국 간 무역총액의 25%를 담당함<sup>11)</sup>
  
- 대만은 일본과 2013년 산업협력 MOU 및 전기전자제품 검사 MRA를 체결할 예정임
  
- 현재 이스라엘, 싱가포르 및 중국 등과도 MR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대만과 중국은 2012년 세관협력협정을 맺었으며 이 협정을 통해 AEO 업체에 대해 통관 절차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합의함<sup>12)</sup>

---

10) [http://aeo.customs.gov.tw/aeo/PTL\\_AEO\\_102.aspx](http://aeo.customs.gov.tw/aeo/PTL_AEO_102.aspx)

11) 주 타이베이 대표부

12) <http://www.taiwanembassy.org/mp.asp?mp=1>

## II.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4」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04년부터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조사하여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명으로 발표하고 있음
  - 2014년에 발간된 「Doing Business 2014」는 2013년 한 해 동안 189개국에 대하여 부문별로 조사·평가한 내용이 수록됨
  - 「Doing Business 2014」 보고서상 순위를 결정짓기 위하여 조사된 분야는 사업 개시(Starting a business), 건설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력 수신(Getting electricity), 부동산 취득(Registering property), 신용 취득(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세금 납부(Paying taxes),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 및 청산(Resolving insolvency) 등 10개의 지표임
  -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에 있어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7위에 올랐음
  
- 당해 보고서의 무역분야 순위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의 개수와 수출입 소요 일수 및 소요비용 등을 산출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필요서류가 적고 수출입 소요 기일이 짧을 수록 더욱 높은 순위에 오르는 형식임
  - 무역분야에서 2013년 보고서상 3위에 올랐던 우리나라는 2014년 보고서에서도 2013년과 같이 3위에 오름

〈표 II-1〉 「Doing Business 2014」 대만의 무역분야 순위 비교

구분	대만	East Asia & Pacific	OECD (평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수출필요서류(개수)	5	6	4	3	4	3
수출소요시간(일)	10	21	11	6	11	8
수출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655	856	1,070	460	450	670
수입필요서류(개수)	6	7	4	3	4	3
수입소요시간(일)	10	22	10	4	8	7
수입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720	884	1,090	440	485	695
무역분야 순위	18	-	-	1	5	3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Taiwan」

- Doing Business 2014 대만의 종합 순위는 189개국 중 16위로, 지난해 16위와 순위가 동일하며 무역부문(Trading Across Borders) 또한 18위로 지난해 18위와 순위가 동일함
  - 대만은 계약이행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무역부문과 부동산 취득을 제외하고 사업 개시, 건설 허가, 신용 취득, 세금 납부 등 나머지 분야에서는 순위가 하락하였음

〈표 II-2〉 대만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

(단위: 일, 달러)

구분	수출		수입	
	소요기간	비용	소요기간	비용
서류준비	5	175	5	240
세관통관	1	100	1	100
항만(터미널)	2	180	2	180
내륙운송	2	200	2	200
합계	10	655	10	720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Taiwan」

- 대만에서 해상 수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컨테이너당<sup>13)</sup> 약 655달러이며,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5가지이고, 서류 준비, 수출통관, 국내 운송, 항만업무 등 수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총 10일이 소요됨
- 해상 수입에 있어서 컨테이너당 약 720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5가지이고(화물인도 지시서 제외), 서류 준비, 수입통관, 국내 운송, 항만 업무 등 수입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총 10일 소요됨
- 대만의 수출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출입 신고서, 포장명세서 그리고 터미널 화물처리 영수증(Terminal handling receipt)의 다섯 가지이며 그 밖에도 수입 시 제출하는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가 있음

〈표 Ⅱ-3〉 대만의 수출입 시 필요 서류

수출 시 필요 서류	수입 시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ll of Lading(선하증권)</li> <li>○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li> <li>○ Packing list(포장명세서)</li> <li>○ Customs export declaration(수출신고서)</li> <li>○ Terminal handling receipts (터미널 화물처리 영수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ll of Lading(선하증권)</li> <li>○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li> <li>○ Packing list(포장명세서)</li> <li>○ Customs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서)</li> <li>○ Terminal handling receipts (터미널 화물처리 영수증)</li> <li>○ Delivery Order(화물인도지시서)</li> </ul>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Economy Profile: Taiwan」

13) 20피트 컨테이너(TEU) 만재화물 기준이며,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금액을 산정함

##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임
  - 이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의견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와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됨
  - 2013년 보고서는 미국의 57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sup>14)</sup>
  
- 201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미국의 수출업자 입장에서 작성된 57개 각 국가의 수입정책(Import Policies)과, 비관세장벽(NTBs, Non-tariff barriers), 지식재산권 보호(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등 무역 및 투자장벽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음
  
- 보고서 중 대만 무역개관 부분에서는 대만이 미국의 16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라는 점, 양국 간 수출입 규모 추이,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금액에 관해 언급함
  - 2012년 미국의 對대만 무역흑자액은 14.5억달러로 이는 2011년보다 1억달러 증가한 수치임
    - 2012년 미국의 對대만 수출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4.4억달러, 對대만 수입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38.9억달러였음
  - 2012년 미국의 對대만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2011년도의 15.8억달러보다 증가한 21.8억달러로, 미국의 對대만 투자는 주로 제조업과 도매업 및 금융보험업에서 이루어짐

---

14) 2010년부터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및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 가. 수입 정책(Import policies)

- 2002년, WTO에 가입하면서 대만정부는 24개 농산품목 및 소형 자동차에 대한 저율관세 할당(TRQs, Tariff Rate Quotas)을 실시하였음
- 2011년 소형 자동차에 대한 TRQs를 모두 폐지함
  - 또한 소형차에 부과되는 물품세를 35%에서 30%로 낮추었음
  - 물품세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철회될 예정임
- TRQs를 적용받는 몇몇 농산물에 대해 대만은 특별세이프가드(SSGs, Special Safeguards)를 유지하고 있으며 SSGs 기준 물량을 넘어서는 수입량에 한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함
  - 지난 몇 년간 대만은 가금육<sup>15)</sup>과 내장 그리고 우유제품에 SSGs를 적용해 왔음

### 나. 수입 제한(Import controls)

- 중국과 ECFA 체결에 따른 조기수확프로그램에 의해 대만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267개의 품목은 관세 면제 및 관세 축소 혜택을 받게 됨
  - 2013년 1월까지 관세 혜택이 점진적으로 시행되나 여전히 중국산 약 2,0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 9월부터 대만 행정부는 미국의 소고기 시장에 대한 개방을 시작하였음
- 2002년 WTO 가입 이후 현미 수입에 대한 수입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수입의 경우 35% 혹은 50,652MT<sup>16)</sup>, 공공부문의 경우 65% 혹은 94,068MT로 한정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수입 할당은 원산지과 입찰방식에 따라 정해짐

15) 식육용의 가금류인 닭, 칠면조, 집오리, 거위, 꿩의 식육으로 이용되는 근육 부위에 대한 총칭

16) Metric Ton

- 대만은 2010년 국내산 미주 막걸리(mijiu rice wine)에 대한 세금 인하 정책을 시행하였음
  - 담배세 및 주류세 시행령(Tobacco and Alcohol Tax Act)의 개정으로 조리된 막걸리(Cooking rice wine)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이 항목에 포함된 미주 막걸리의 경우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됨
  - 조리되지 않은(non-cooking) 알코올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낮은 2.5대만달러의(리터당 0.08대만달러) 세금이 부과되어 미국을 비롯한, EU와 같은 교역 상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음

#### 다.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

- 대만은 수출 가공구에 있는 기업과 신흥 산업과 관련한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대만 재정부는 2011년 제조품의 수출을 위해 반입되는 특정 요소와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환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환급은 전자, 기계, 화학, 플라스틱, 식물에 해당하는 1,269개 제품에 적용됨

#### 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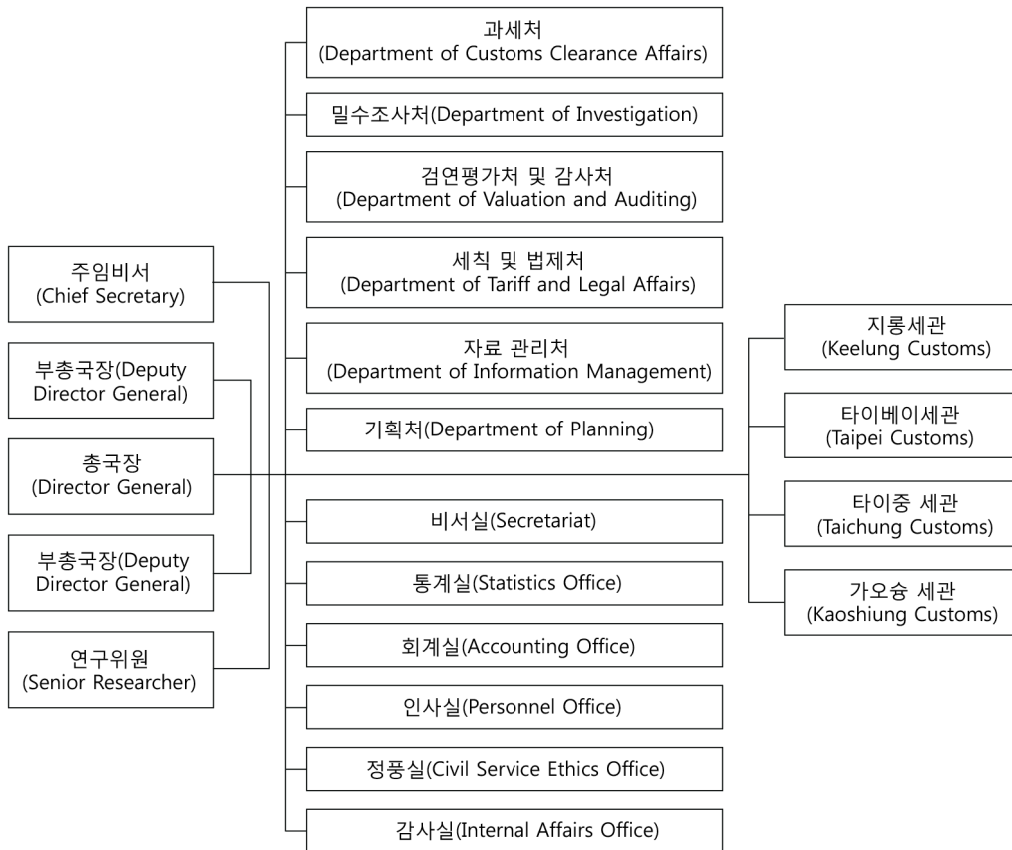
- 대만 식품의약품국(TFDA,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의료장비(medical device)업체가 '합법적 제조자'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 제조지에 상관없이 업체 스스로 시판 후 조사를 하도록 하여 의료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함
- TFDA는 대만 관무서와 함께 2012년 3월부터 인증표에 표기가 된 원산지에서 수입되거나 혹은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제조자에 한해 의료장비에 대한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함
  - 이때 업체는 법적 제조자와 조립 공장의 이름 그리고 원산지 및 주요 성분에 대한 등록문서를 제출해야만 함

### Ⅲ. 대만의 통관환경

#### 1. 통관행정 개요

##### 가. 통관행정 조직

〈그림 Ⅲ-1〉 대만 관무서 조직도



자료: 대만 관무서, 「대만의 통관제도」(2003);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2012)

- 대만의 관무서(關務署, Customs Administration)는 한국의 관세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 통관 업무를 관할하며 국가 재정부에 소속되어 있음
  - 관무서가 관리하는 직속 세관은 지룽(基隆)관세국(이하 세관), 타이베이(台北)세관, 타이중(台中)세관, 가오슝(高雄)세관이며, 그 이하 12개 분국(分局) 및 지국(支局)으로 세부 관할을 함
  
- 과세처는 화물 통관을 비롯하여 보세창고, 수출가공구, 관세구역 내의 공장들과 사업 그리고 과학연구단지, 농업생명공학 연구단지, 면세점 등을 관리하며 관세와 부과금의 면제 및 징수를 담당함
  
- 세칙 및 법제처는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분류하며 관세법, 규정의 검토 및 개정을 담당함
  
- 밀수조사처는 밀수와 관련한 법과 규정의 실행 및 밀수 방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료관리처는 통관정보 및 이와 관련한 기타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 지역세관은 수입관세, 물품세, VAT, 주류세, 담배세를 징수하며 수출입 통관을 담당함
  - 또한 밀수 방지 및 밀수품, 운송, 대리인 관리를 비롯하여 보세지역의 공장이나 보세창고 또한 관리 감시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
  - 그 밖에도 수출입과 관계되는 창고와 컨테이너 장치장을 감시하고 세관의 감시선 및 통신장비의 유지 관리, 기타 정부기관 지원 및 관련 기관의 규정을 실행하는 책임을 이행하고 있음
  
- 검면 평가처 및 감사처는 수입물품의 가치 평가 및 조사, 수출입 물품의 사전 회계를 담당하며 기획처는 관무서 업무의 기획 및 특별관세, 관무서 업무에 대한 평가, 국제협력을 담당함
  
- 비서실은 공식문건의 보관 처리, 금전출납, 건물보수,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통계실

은 수출입 무역 통계 및 기타 관련 통계를, 회계실은 회계, 예산,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함

- 인사실은 지역세관의 인사 관리 감독을 담당하며, 정풍실은 직원들의 법령준수 여부 및 불법행위 방지, 감사실은 관무서 및 세관 직원들의 관리 및 유지 그리고 지역세관 감시의 기능을 함

## 나. 각종 수입 허가제도

### 1) 상품 검험법에 따른 BSMI<sup>17)</sup>인증

- 대만 정부는 상품 검험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 생산, 가공되는 농·공산품 및 수출입되는 모든 농·공산품에 대해 상품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대만 경제부 표준검사국<sup>18)</sup>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검사기구 및 검사방법 기준 등 과 같은 관련 법령은 검사국 홈페이지<sup>19)</sup>에서 확인 가능함
  - 샘플 제품이나, 전시용품 등 비매품은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신청 조건,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표준검사국이 정함
- 수입상품의 신청은 보통 수입 대리상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시 신청서, 영리사업등기증명서(사업자 등록증), 회사등기증명서, 신분증, 상품별 요구서류 등을 따로 첨부해야 함
- 인증서의 경우 대만인 혹은 대만법상 등록 또는 허가되어 있는 업자(혹은 업체) 이름으로 신청해야 함
- 규정에 따른 상품검사, 평가, 등록, 자격발행에 대해서는 모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름

17)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18) 대만 경제부 표준검사국 <http://www.bsmi.gov.tw/wSite/mp?mp=2>

19) <http://www.bsmi.gov.tw/wSite/lp?ctNode=3563&CtUnit=1959&BaseDSD=7&mp=2>

- 제출되는 기술문서가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능력검사기관(Competent inspection authority)에서 중국어 번역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번역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증명을 해야 함<sup>20)</sup>
  
- 대만 내 제조자는 제조자가 소재한 관할 능력검사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외 제조자는 대만 내 대리업체를 지정한 후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업체는 관할 능력검사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 상품검사 필수품목이나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출입 및 판매가 불가능하며 공장에서의 반출도 불가능함
  -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공장에서 반출 혹은 수출입할 경우에는 20만~200만대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신청제품이 검사에 합격되고 합격제품으로 등록된 후 BSMI 또는 관할 능력검사기관은 제품인증 등록 및 등록코드를 승인하여 제조자에 인증마크 도안 표준을 송부함
  
- 수입자가 제품인증 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자는 등록증 사본 또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시리즈 제품의 등록을 원할 때에는 추가 등록을 위한 새로운 인증서 발행을 위해 능력검사기관에 구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구인증서의 사본은 자동적으로 무효화됨
  
- 소비자가 인증제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능력검사기관은 공장, 하역창고, 수입자 또는 대리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수시점검을 통해 공장의 품질 관리에 대한 사후 관리도 실시할 수 있음
  
-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하는 상품은 경제부 표준검사국의 상품검사 조회시스템<sup>21)</sup>을 통해

20) 대한상공회의소 종합 인증정보<http://certinfo.korcham.net/Client/Product/ProductCert.aspx?idx=72>

21) [http://civil.bsmi.gov.tw/bsmi\\_pqn/index.jsp?lang=en](http://civil.bsmi.gov.tw/bsmi_pqn/index.jsp?lang=en)

확인 가능하며 상품검사 표준 규격은 CNS(Chinese National Standards)규정 조회 시스템<sup>22)</sup>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표 Ⅲ-1〉 BSMI 인증 마크, 라벨 종류 및 해당 제품군

마크	제품군
	일반상품
	전기제품, 화재용품, 전자제품, 건축자재, 가스용품, 유아용품, 개인보호장비 등
	컴퓨터제품, 메인보드, 카드 등
	가스캔, 라이터 등
	시멘트, 방화코팅 등
	장난감 등
	택시미터, 체적계 <sup>23)</sup> , 조명도계, 수동 저울 등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종합인증정보<sup>24)</sup>

22) <http://cnsonline.com.tw/en/login.jsp?go=free>

23) 액체, 기체, 분체(粉體), 입체(粒體) 따위의 부피를 재는 계량기

24) <http://certinfo.korcham.net/default.aspx>

## 2) 라벨링

- 대만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증문으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만 함
-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 검사 또는 인증 역시 국제인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대만 현지 검사 혹은 검역 및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함
- 대만당국은 식품 및 음료 라벨링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거나 변경된 라벨은 입항 시 현지 검역관에 의해 통관이 거부될 수 있음
- 2005년 1월 이후 제조된 모든 구운 식품 및 곡류 가공식품(cereal-based food products)은 영양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2006년 1월 이후 제조된 모든 통조림 식품 및 포장사탕은 영양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UV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함<sup>25)</sup>

## 3) 기타 특수 인증

- CI(Commodity Inspection)마크는 전기류, 전자류(IT 설비 및 오락용 시청각 설비), 기계류(전동기기 및 설비), 조명류(등기구), 화학공업류(타이어 및 완구)에 대해 강제성을 띠는 인증임
- 경제부 표준검사국이 '수입통관검사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상품은 국산품 혹은 수입상품을 불문하고 상품안전마크를 취득해야만 시중에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함

25) 외교통상부(2011), 「분야별 통상환경」

- ARTC(Auto Research and Test Center)<sup>26)</sup> 인증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성능, 환경성 및 품질에 대한 검증에 대한 인증임
  - ARTC는 대만 내의 시험소에서 드라이빙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및 규격 테스트를 직접 실행하며 테스트 대상 샘플을 ARTC에서 엔지니어와 함께 시험하여 인증을 마킹함
- CNS(Chinese National Standard)<sup>27)</sup>는 1944년 경제부 표준검사국(NBS)이 제정한 규격으로서 강제성을 띠지는 않으며 토목, 건축, 기계, 광산, 농업, 식품, 목재 등 22개 분야를 대상으로 함
- CNS 신청 시에는 신청서, 영리사업등기 증명서, 회사등기 증명서, 신분증, 상품별 요구서류 및 인증기관이 요청한 시료를 일반적으로 발송하여 신청하도록 함
- 신청인은 대만에 거주하는 내국인 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로 한정되며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필요함
- VPC(Voluntary Product Certification)<sup>28)</sup>마크는 안전과 관련한 주요 부품, 등기구, 소켓, 전지 충전기, 리튬전지, 자동차 EMC(전자기파 적합성) 헬스기구 등 품목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인증임
- 그 밖에도 친환경 인증마크로 행정원 환경보호서에서<sup>29)</sup> 발행하는 환경보호 인증마크, 경제부 에너지국<sup>30)</sup>에서 발행하는 에너지 절약 인증마크, 행정원 환경보호서<sup>31)</sup>에서 발행하

26) ARTC홈페이지 [http://www.artc.org.tw/english/05\\_about/01\\_01list.aspx?pid=2](http://www.artc.org.tw/english/05_about/01_01list.aspx?pid=2)

27) CNS홈페이지 <http://www.cnsmark.org.tw>

28) <http://www.bsmi.gov.tw/wSite/ct?Item=11357&ctNode=4106&mp=1>

29) 행정원 환경보호서 <http://greenliving.epa.gov.tw> 재활용성, 저오염, 자원절약성에 부합하는 제품에 발급

30) 경제부 에너지국 <http://www.energylabel.org.tw> 에너지 효율이 CNS표준보다 10-50% 높은 제품에 발급

31) 행정원 환경보호서 <http://cfp.epa.gov.tw>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 감축

는 탄소성적표기 인증마크 등이 있음

#### 다. 수입제한제도<sup>32)</sup>

- 대만은 공공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원(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
-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식용 쌀, 땅콩, 마늘, 우유 등 16종의 농산품 대해 수입 할당제를 적용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만은행<sup>33)</sup> 무역부서에서 관련실무를 담당하고 있음
  - 바나나와 녹용, 동양배<sup>34)</sup>를 제외한 나머지 13종 품목<sup>35)</sup>은 매년 최고 및 최저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음<sup>36)</sup>
- 수입제한 품목은 입찰을 통해 할당량을 정하고 있으며 대만은행에서 진행하는 관세배액(關稅配額) 항목의 농산품에 한해 WTO 회원 국가들이 입찰에 참여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대만 업체만 참여 가능함
  - 따라서 대만 농산품 대리상<sup>37)</sup>이 참여해 입찰을 따내야 정해진 농산품에 한해 수입이 가능함
- 9인승 이하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동차의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 동일 관세 17.5%로 수입량 제한이 완전 해제

---

량을 달성한 제품에 발급

32) 외교통상부(2011), 「외국의 통상환경」

33) [http://www.bot.com.tw/Trade/Trade\\_wto\\_result/Pages/default.aspx](http://www.bot.com.tw/Trade/Trade_wto_result/Pages/default.aspx)

34) 결과확인은 [http://www.bot.com.tw/Trade/Trade\\_wto\\_result/rt010/Pages/default.aspx](http://www.bot.com.tw/Trade/Trade_wto_result/rt010/Pages/default.aspx)에서 가능함

35) 결과확인은 [http://www.bot.com.tw/Trade/Trade\\_wto\\_result/rt020/Pages/default.aspx](http://www.bot.com.tw/Trade/Trade_wto_result/rt020/Pages/default.aspx)에서 가능함

36) 외교통상부(2011), 「외국의 통상환경」

37) 대만 대리상은 KOTRA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바이어찾기에서 검색 가능함

되었음<sup>38)</sup>

-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2006년 2월 대만과 복숭아심식나방의 유입 방지를 위한 ‘수출 검역조건’에 합의한 국가(한국, 일본)를 제외한 동 병충해 위험지역 국가의 배, 사과, 복숭아의 對대만 수출을 금지하였음<sup>39)</sup>
  - 2005년,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일본산 수입사과에서 대만에 없는 복숭아심식나방 유충의 발견으로 동 병해충 존재국가(한국포함)로부터 과일수입 금지 입법을 예고하였음
    - 한국의 국제검역과장이 방문하여 한국산의 수출검역을 조건부로 과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수출검역 조건부 한국산 과일 수입방안에 최종 합의하여 한국산 과일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수입됨
  
- 배, 사과, 복숭아의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의 대만 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한국과 대만 간에 합의한 ‘수출검역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대만에 수출할 수 있음
  
- 대만 식품위생처는 2006년 4월 한국의 비타민음료 제품의 벤젠함유량이 높아 대만 내 판매되는 모든 한국 비타민음료 제품의 판매를 중지 및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공관의 노력으로 수입이 재개됨<sup>40)</sup>
  - 대만 대사관에서는 해당 우리 기업과 함께 식품위생처장을 만나 판매중지 해제를 요청했으며 5월 제품의 무해성을 홍보하는 기자설명회를 통해 식품위생처장 및 산자관을 설득하여 수입중지가 해제됨
  
- 대만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등과 같은 수입 규제 사항이 없거나 적은 편임

38) 외교통상부(2011), 「외국의 통상환경」

39) 외교통상부(2007), 「통상마찰 및 해결사례-대만」

40) 외교통상부(2007), 「통상마찰 및 해결사례-대만」

〈표 Ⅲ-2〉 2013년 농산물 품목별 할당량

(단위: 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할당량	최고할당량	할당방식
식용 쌀 <sup>41)</sup>	15,000	20	3,000	할당 기간마다 입찰
	20,652	20	4,130	
	15,000	20	3,000	
바나나	13,338	20	2,667	총량할당
녹용	5	50kg	-	비례할당
동양배	9,800	20	-	
팥	2,500	20	500	할당 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타입)	21,298	250	4,259	
땅콩 <sup>42)</sup>	5,235	14	1,047	
마늘	3,520	12	704	
마른 표고버섯	144	3	28	
	144	3	28	
마른 팽이버섯	50	3	10	
	51	3	10	
야자	3,000	20	600	
	7,000	20	1,400	
빈랑	8,824	15	1,764	
파인애플	11,870	15	2,374	
	12,000	15	2,400	
망고	7,000	11	1,400	
	5,755	11	1,151	
유자	4,300	15	860	
용안과육	330	15	66	

자료: 대만 재정부, KOTRA 국가정보

□ 과거 대만은 한국산 폴리프로필렌, 고밀도 및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High Density Polyethylene and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등의 화학제품과 열연 H형강, PC

41) 식미는 현미를 기준으로 하며, 왕겨, 백미 및 쌀로 만든 식품 수입 시, 각 현미의 단위로 킬로그램을 계산함. 환산비율 관련사항은 해관수출입규정 제98장의 참조 4의 규정을 참조

42) 땅콩은 껍질이 있는 땅콩을 기준으로 하며, 껍질을 제거한 땅콩, 땅콩가루, 땅콩기름 수입 시, 껍질이 있는 땅콩 단위로 킬로그램을 계산함. 껍질을 제거한 땅콩, 땅콩가루, 땅콩기름 대 껍질이 있는 땅콩의 비율은 각각 1.5/1.8/3.8:1로 환산하며, 혼합된 땅콩은 껍질이 있는 땅콩으로 킬로그램을 계산함

강선, 포틀랜드 시멘트 등에 최소 4.17%에서 최고 126.61%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음<sup>43)</sup>

- 2002년, 대만 경제부는 한국산 시멘트에 대해 최고 5년간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후 2007년 3월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을 위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였음
  - 동 조치에 따라 2003년 이후 對대만 시멘트 수출은 전무하였음<sup>44)</sup>

□ 대만 제지협회가 2011년, 한국산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네덜란드산 코트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고 한국산 코트지에 14%의 반덤핑 관세를 요구하였으나 대만 재정부는 2012년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함

□ 2011년 11월, 차이나 스틸사가 대만 재정부에 한국, 중국, 일본 및 인도의 철강제품에 대해 20~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2년 5월,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을 내림

□ 이후 2013년 8월 15일부터 약 4개월간 대만 재정부에서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잠정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저 20.52%에서 최고 46.02%까지 부과될 예정임

□ 철강 제품은 대만의 對한국 주요 수입품목으로 수입이 많으면서도 저가품의 유입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 2012년 중화민국 전국공업총회의 수입품목위협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위협품목은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철강 평판압연제품, 합금강 평판압연제품, 스테인리스강의 봉,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등이 있음

□ 그 밖에 한국의 고밀도 및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세이프가드에 대한 조사가 2013년 10월 개시됨

43) KITA 통상·수입규제 <http://antidumping.kita.net/>

44) 외교통상부(2010), 「통상마찰 및 기업애로 해소 사례집-대만」

### 라. 중국제품에 적용되는 수입 규제

- 대만 정부는 1988년부터 점진적으로 중국제품 수입을 개방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품의 경우 선별적으로 허용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최초 개방 시 중국제품의 개방 품목 수 비중은 0.19%였으나 2013년 6월 기준으로 전체 품목의 80% 이상을 개방하였음
- 수출입 품목분류표 중 수입규정에 규정코드 MWO가 명시된 품목에 한해 중국제품의 수입을 금하고 있으며 MP1이 명시된 경우 조건부로 수입을 허가함<sup>45)</sup>
- 이 밖에 수입이 허가된 품목은 별도로 규정 코드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을 취급할 경우에는 수출입 규정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중국산 제품의 수입 시에는 별도의 수입 허가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품목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대만 경제부에서 공고한 수입허가 품목이거나 연구 및 개발용 샘플
  - 골동품, 예술품, 문화재 보수유지재료, 종교 및 민속 관련 문물, 문화교육 활동에 필요한 소량의 물품
  - 중국 산업기술 도입 허가법에서 규정하는 수입허가제품
  - 학교 및 연구기관 또는 동물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용될 동물
  - 보세공장에서 수입한 가공원료 및 부품 또는 재가공 후 전량 수출될 제품
  - 가공수출구역, 과학공업단지에서 수입한 가공원료 및 부품 또는 재가공 후 전량 수출될 제품

45) MWO 및 MP1은 코드 명칭이며 MWO 코드에 대한 설명은 [https://fbfh.trade.gov.tw/rich/text/fhj/asp/FHJI010L3.asp?id=I&code\\_id=MW0](https://fbfh.trade.gov.tw/rich/text/fhj/asp/FHJI010L3.asp?id=I&code_id=MW0)에서 MP1코드에 대한 설명은 [https://fbfh.trade.gov.tw/rich/text/fhj/asp/FHJI010L3.asp?id=I&code\\_id=MP1](https://fbfh.trade.gov.tw/rich/text/fhj/asp/FHJI010L3.asp?id=I&code_id=MP1)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의료용 한약재
- 행정원 신문국에서 허가한 출판물, 영화, 영상물 및 TV프로그램
- 재정부와 세관에 허가받은 입국객의 휴대물품
- 선원 및 항공사 직원들의 규정 내의 휴대물품
- 양안 어업분쟁의 화해 및 배상으로 반입되는 어획물
- 기타 경제부에서 특별히 수입을 허가한 품목

## 마. 관세율체계

### 1) 관세제도

- 수입 시 대만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관세를 비롯하여 특별관세, 물품세(Commodity Duty), 무역진흥서비스비(Trade Promotion Service Fee),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등이 있음
- 관세는 CIF 상업송장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현 관세제도는 1997년 관세법<sup>46)</sup>을 기본으로 함
- 대만은 세관 수입세칙 규정의 화물종류와 적용세율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 적용하는 복합제도 사용하고 있음
  - 일반 화물의 대부분은 종가세 방식으로 수입됨
  - 품질이 상이하고 소비자가격의 격차가 높아 기준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20여 개 수입 농·수·축산품 등에 대해서는 1976년부터 종량세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 대만은 수입부과금을 따로 정해 놓지 않고 물자 공급 혹은 선 경영상태 조절을 위해 국내외 경제 특수상황이 발생했을 시 대응을 위해 임시로 관세를 조정하는 '임시조정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46) 부록 Ⅲ. 대만 관세법 참조

- 대만은 관세율을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WTO 152개 회원 가입국 및 대만과 상호우대관계를 체결한 27개국은 제1란(Column I)의 세율을 적용함
  - 제2란(Column II)의 세율은 파나마와 과테말라와 같이 대만과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저개발 국가 및 개발 중인 국가에 적용됨
  - 제3란(Column III)의 세율은 제1란과 제2란에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 적용함

[그림 Ⅲ-2] 대만 관세율 분류 한국어 예시

中華民國 輸出入貨品 分類號列 C.C.C.Code (HS 코드)		檢 查 號 碼 CD (검사 코드)	貨名 (제품명)	Description of Goods (제품 설명)	單 位 Un it (단 위)	國定稅率 TariffRate (관세율)			稽 徵 特 別 規 定 CR (세금 징수 규정)	輸出入規定 Imp.&Exp. Regulations (수출입 규정)	
稅則號 別 Tariff NO. (관세 코드)	統計 號別 SC (통계 코드)					第一欄 Column I (칼럼1) *한국은 칼럼1 적용	第二欄 Column II (칼럼2)	第三 欄 Column III (칼럼 3)		輸 入 Import (수입)	輸 出 Export (수출)

[그림 Ⅲ-3] 대만 관세율 분류

Tariff Database Search <span style="float: right;">Print</span>												
中華民國輸出入貨品分類號列CCC Code		檢 查 號 碼 CD	貨名	Description of Goods	單位Unit	國定稅率 Tariff Rate			稽徵特別規定CR	輸出入規定 Imp. & Exp. Regulations		生效日 Valid Date
稅則號別Tariff_NO	統計號別SC					第一欄 Column I	第二欄 Column II	第三欄 Column III		輸入 Import	輸出 Export	
01011000	10	4	馬, 純種繁殖用	Live horses, pure-bred breeding animals	HED KGM	2.5%	0%(GT) 0%(HN) 0%(NI) 0%(PA) 0%(SV)	2.5%		401 401	441	稅則生效日期: 2004/01/01 輸入規定生效日: 2004/09/07 輸出規定生效日: 2003/12/19 截止日期: 9999/99/99

자료: KOTRA, 「대만 관세제도」

- 대만은 총 11자리의 C.C.C코드(Chinese Commercial Code)를 사용하며 앞의 6자리는 HS Code를 사용함
- 2013년, 대만의 평균 명목관세율은 5.89%이며, 농산품의 평균 명목관세율은 13.88%, 공산품의 평균 명목관세율은 4.23%임<sup>47)</sup>
  - 상품별 관세의 세수입에 수입금액을 제하여 산출한 평균 실행관세율 수준은 1.2%

수준으로, 농산품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8.16%, 공산품은 0.72%임<sup>48)</sup>

- WTO의 국가별 관세율체계에 따르면, 2012년 대만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6.1%이며 평균 실행관세율은 6.3%임
  - 2012년, 대만 농산품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16.4%, 평균 실행관세율은 17.3%이며 비농산품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4.5%, 평균 실행관세율은 4.7%임

〈표 Ⅲ-3〉 2012년 관세적용범위

(단위: %)

구분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2002년 WTO가입
단순평균 양허관세율	6.1	16.4	4.5	농산물할당관세: 6.1 농산물특별긴급관세: 5.4
단순평균 실행관세율	6.3	17.3	4.7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3

- 수입되는 농산품의 약 49%에 5~25%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수입되는 농산품의 26.2%는 면세, 12.4%는 5~10%, 10.6%는 10~15%, 25.9%는 15~25%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됨
- 비농산품의 경우 전체 수입품목의 약 59%에 0~10%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됨
  - 수입되는 비농산품의 31.2%는 면세, 38.7%는 0~5%, 20.6%는 5~10%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됨
- 대만으로 수입되는 면은 WTO 양허세율 및 실행세율 적용 시 100%가 면세되나 의류는 이와 반대로 WTO 양허세율 및 실행세율 적용 시 전혀 면세되지 않음
- 당류와 설탕과자는 WTO 양허세율 적용 시 면세되지 않으나 실행세율 적용 시 6.3%가 면세되며 유제품은 WTO 양허세율 적용 시 10%가 면세되나 실행세율 적용 시 면세되지 않음

47) 대만 재정부, KOTRA → 대만 → 국가정보 → 관세제도

48) 대만 재정부, KOTRA → 대만 → 국가정보 → 관세제도

〈표 Ⅲ-4〉 2012년 농산물·비농산물의 관세분포

(단위: %)

분포	면세	0≤5	5≤10	10≤15	15≤25	25≤50	50≤100	> 100
		관세품목 및 수입가격						
농산물								
양허관세	25.4	13.7	13.3	11.0	25.5	7.5	1.3	2.2
실행관세	26.2	14.5	12.4	10.6	25.9	7.4	1.2	2.8
비농산물								
양허관세	31.7	39.8	19.1	7.4	1.5	0.4	0.0	0.0
실행관세	31.2	38.7	20.6	7.8	1.3	0.4	0.0	0.0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3

〈표 Ⅲ-5〉 품목별 관세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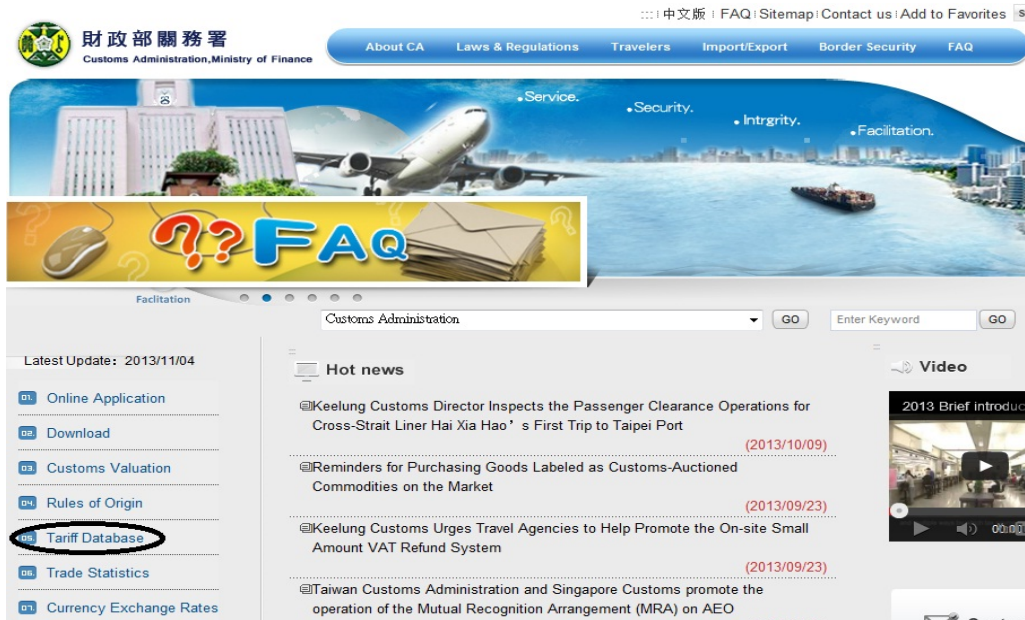
품목	WTO양허세율			실행세율		
	평균	면세비율	상한	평균	면세비율	상한
동물성 생산품	16.6	3.2	45	16.7	2.7	45
유제품	15.5	10.0	84	16.1	0	84
과일, 채소, 식물	19.8	10.0	356	20.0	9.4	327
커피, 차	8.5	41.7	34	8.5	41.7	31
곡물 및 곡물조제품	35.0	4.9	449	30.4	8.1	297
종유, 지방 및 유지	17.2	57.2	338	18.4	54.5	338
당류와 설탕과자	49.5	0	143	16.1	6.3	28
음료 및 담배	15.8	18.2	40	16.0	18.6	40
면	0.0	100.0	0	0.0	100.0	0
기타 농산물	3.6	60.8	500	3.3	62.1	500
어류 및 어류제품	18.2	5.3	209	18.4	4.8	186
광물 및 금속	2.9	52.8	13	2.8	56.3	13
석유	5.0	8.3	10	2.2	43.9	5
화학제품	2.8	25.8	20	2.8	26.9	20
목재, 지류 등	0.5	93.3	13	0.4	94.3	13
직물	7.6	4.2	13	7.4	3.1	13
의류	11.7	0	12	11.7	0	12
가죽제품, 신발류 등	5.7	13.4	10	5.2	13.9	10
기계류	3.7	26.6	20	3.1	25.9	18
전자기기	4.2	27.7	15	4.0	27.1	15
이송장비	7.8	26.6	30	7.5	27.5	30
기타 제품	3.2	37.4	14	3.2	33.1	14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3

## 2) 관세율 조회처

- 관세율은 대만 WTO센터 관세 검색시스템 및 대만 관무서 관세 검색시스템에 접속하여 알 수 있음
  - 대만 WTO관세 검색시스템 관세율 확인은 <http://db.wtocenter.org.tw/tariff-index.asp> → 해당 국가 클릭(한국의 경우 南韓, Korea, 2012) → 請選擇欲查詢的稅則號別前二碼에서 분류 선택 → 請選擇欲查詢的稅則號別前四碼에서 HS에서 앞 4단위 선택 → 해당 국가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음<sup>49)</sup>
  - 대만 관무서 관세 검색시스템 관세율 확인은 <http://eweb.customs.gov.tw/mp.asp?mp=21> → Tariff Data Base클릭 → Tariff Number 입력(4자리일 경우 해당 C.C. Code클릭) → Column에 따른 해당 국가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Ⅲ-4] 대만 관무서 홈페이지



자료: 대만 관무서

49) <http://eweb.customs.gov.tw/ct.asp?xItem=15225&ctNode=6488>에서 보다 자세한 관세율 검색지침 확인

## 바. 내국세제도

### 1) 물품세(Commodity Tax)<sup>50)</sup>

- 물품세는 제조되었거나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며 품목별로 최소 8%에서 최대 35%까지 부과되며 선적한 후 15일까지 납부되어야 함<sup>51)</sup>
- 차량은 17~25%, 고무 타이어는 10, 15%, 음료 8, 15%, 유리 10%, 전기류 10~20%의 물품세가 부과되며 CIF가격에 해당 세율을 곱해서 계산함
  - 전기류의 경우 냉난방기의 물품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며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1cc 이상 승용차에 가장 많은 물품세가 부과됨
- 시멘트는 Ton(톤)당 190~600대만달러의 품목세가 부과되며 유류 및 가스류의 경우 kl(킬로리터)당 690~6830대만달러의 품목세가 부과됨
  - 시멘트의 경우 백색 혹은 착색 시멘트에 물품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며 유류 및 가스류는 휘발유, 디젤유, 등유에 높은 물품세가 적용됨

---

50)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Content.aspx?PCODE=G0340076>에서 법령 다운로드

51) PWC Taiwan Pocket Tax Book

〈표 Ⅲ-6〉 품목별 물품세

(단위: % / 대만달러)

물품 종류	하위분류	세율 및 세액	비고(면세 및 특수 세율)
차량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용 수입차와 공공 안전 및 위생을 위한 특수목적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면세</li> <li>- 우편물 운송 차량은 면세</li> <li>- 농기구를 설치한 견인차 및 정부 규정 및 규격에 따른 농지 운반차량은 면세</li> <li>-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공정용 차량은 면세</li> </ul>
	승용차(배기량 2,001cc 이상)	35	
	화물차·대형차 및 기타 차량	15	
	오토바이	17	
고무 타이어	대형차 및 화물차용	10	이너튜브, 솔리드 타이어, 인력이나 동물력 차량, 농경기용 고무 타이어 면세
	기타	15	
음료	천연과일 야채즙 희석음료	8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천연과즙, 잼, 과당시럽, 농축 과즙 및 천연야채즙 면세
	기타 음료품	15	
평판유리	평판유리	10	전도유리 및 구조 생산용 강화유리 면세
전기류	냉장고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용 습도 조절기는 면세</li> <li>- 32cm 이하의 휴대용 전축은 면세</li> <li>- 비과세 품목으로 조합된 상품을 보유한 경우 및 세트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할 경우 해당 품목 전체의 CIF가격에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과세</li> </ul>
	컬러TV	13	
	냉난방기	20	
	중앙제어형 냉난방기	15	
	제습기	15	
	VTR	13	
	전축	10	
	녹음기	10	
	오디오	10	
전기 오븐	15		
시멘트	백색 또는 착색 시멘트	600/ton	N/A
	포틀랜드 제 1타입	320/ton	
	포틀랜드 고로 슬래그	190/ton	
	기타	440/ton	
유류·가스류	휘발유	6,830/kl	여러 유류를 혼합하여 다른 용도로 변조된 유류제품은 가장 주된 유류의 세율으로 과세
	디젤유	3,990/kl	
	등유	4,250/kl	
	항공유	610/kl	
	연료유	110/kl	
	용제유	720/kl	
액화석유	690/kl		

자료: 대만 재정부; KOTRA, 「대만 수입규제제도」

2)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 대만은 부가가치세법(Value-added and Non-value-added Business Tax Act)<sup>52)</sup>의 규정에 따라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수입 시 세관에서 대리 수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수입품에 부가되는 VAT는 5%이며 세금 완납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함
  - CIF가격 + 관세 (+ 물품세 + 담배 및 주류세) × 5%로 계산됨

〈표 Ⅲ-7〉 물품 및 서비스별 부가세율 현황

(단위: %)

세율	물품 및 서비스
0	수출품, 면세점에서 파는 물품, 수출가공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 보세구역 <sup>53)</sup> , 수출관련 서비스업종 등
0,1	농산품 도·소매업을 위한 화물인수자 등
1	재보험업,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소매업 등
2	보험, 투자, 보안, 기업어음 등
3	대만 금융기관이 대만에 지부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래
5	일반적인 수입품, 국내 판매품, 금융사업과 관계없는 거래
15	나이트클럽, 쇼 제공 식당
25	미용실, 커피숍, 찻집

자료: 대만 재정부, PwC Taiwan 2012

3) 무역진흥서비스비(Trade Promotion Service Fee)

- 무역진흥서비스비는 1993년 이후부터 실시한 무역법 제21조 무역법 세칙 17조에 근거하여 부과되기 시작했음

52)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Content.aspx?PCODE=G0340080>에서 다운로드

53) 2011년 보세구역은 농업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단지, 자유무역지역, 세관에서 관리하는 정부 승인의 물류센터를 포함함

- 세관 수출입 물품 모두에 적용되며 CIF 가격의 0.04%를 납부하면 됨
  - 보세창고, 보세공장, 물류센터, 가공수출단지, 과학 공업단지, 면세상품 및 관세법에  
서 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면제됨
- 미납 시에는 경제부 무역국의 제31조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화물 및 세관처리 업무 정지 처  
분을 받게 됨

#### 4) 운송비용

- 대만에는 가오슝항,基隆항, 타이중항, 타이난항의 국제항구가 있으며 특히 가오슝항은  
대만 최대 항구이자 세계 12대 항구로 한국의 선사들이 많이 사용함
- 基隆항에서 부산까지, 타이중항에서 부산 그리고 가오슝항에서 부산까지 20피트 컨테이  
너의 비용은 150달러이며 40피트 컨테이너는 300달러 그리고 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  
역시 300달러임

#### 5) 그 밖의 수입관련 세금

- 대만은 정부나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대만 산업에 타격을 준 경우  
세관이 정상관세 이외 별도관세를 평형세<sup>54)</sup>로 징수함
-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세관의 수출입 운송 도구 및 화물에 대한 특별 서비스 및 허가 증  
명에 대한 특별비용은 재정부가 세관징수비용규칙<sup>55)</sup>으로 시행함
  - 특별비용은 특별검사지, 특별감시비, 이송비, 컨테이너 봉합비, 선적서류 입력대행  
비, 증명서 발부비, 보관비, 등기증 및 자격증 발송비, 조항 서비스비, 일반 서비스비

54) 조세 부담의 균형을 위하여 매기는 세금. 국내 생산품에 매기는 소비세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  
여 같은 종류의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가 이에 해당됨

55) <http://law.moj.gov.tw/ENG/LawClass/LawContent.aspx?PCODE=G0350025>에서 다운

등이 해당됨

- 그 밖에 담배가루, 썬련 및 기타 담배상품에 1kg당 590대만달러, 일반 담배 1,000개당 590대만달러의 담배세가 징수됨
  - 일반 담배 1000개당, 담배가루, 썬련 및 기타 담배상품은 1kg당 1,000대만달러의 건강복리세가 별도로 부과됨
  
- 주류의 경우 양조 주류는 맥주는 1리터당 26대만달러, 기타 양조주류는 1리터당 알코올 성분에 따라 1도당 7대만달러의 주류세가 징수됨
  - 증류주류는 1리터당 알코올 성분에 따라 1도당 2.5대만달러, 합성주류는 알코올 성분이 용량 대비 20% 이상인 경우 185대만달러, 요리용주류는 1리터당 9대만달러, 알코올은 1리터당 15대만달러의 주류세가 징수됨

#### 사. 관세의 감면·면제·유예제도

##### 1) 공장종합단지 및 가공수출단지

- 공장종합단지는 도시근교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종합공업단지나 물류단지, 상공업서비스단지, 전시단지, 수리서비스단지, 쇼핑몰 단지 등 1개 이상의 복합단지임
  
- 주로 경공업, 수리서비스업, 물류업, 도매 및 소매업관련 기업이 입주함
  
- 주요 공업 단지로는 중부과학공업단지<sup>56)</sup>, 신주과학공업단지<sup>57)</sup>, 남부과학공업단지<sup>58)</sup> 등이 있으며 해외로부터 수입한 기계설비, 원료, 연료, 반제품의 수입관세 면세를 비롯하여 상품 및 용역 수출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함

56) 중부과학공업단지 <http://www.ctsp.gov.tw>

57) 신주과학공업단지 <http://www.sipa.gov.tw>

58) 남부과학공업단지 <http://www.stsipa.gov.tw>

- 공업단지는 해외로부터 수입한 기계설비, 원료, 연료, 반제품의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면세 수속이나 담보 보증 등이 절차가 불필요한 이점이 있음
- 그 밖에도 공업단지 입주기업에 상품이나 용역 수출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 가공수출단지<sup>59)</sup>는 대만 정부의 경제발전 계획에 따라 1966년에 설립하였으며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함
- 가공수출단지는 공항이나 항구 인근에 위치하여 물류환경이 좋으며 투자신청에서 심사, 원산지증명, 무역통관 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줌
- 대만은 현재 중부의 타이중, 중강 가공수출단지를 비롯하여 남부의 난쯔, 가오슝, 청국, 가오슝항공, 가오슝, 린광, 핑둥 등 총 9개 수출단지가 있음
- 가공수출단지는 해외로부터 수입한 기계설비, 원료, 연료, 반제품, 샘플에 대한 수입관세, 물품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sup>60)</sup> 만 5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를 반출 시에 관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함<sup>61)</sup>
- 그 밖에도 대만은 외국인 투자 유치 증진을 목적으로 지룽항<sup>62)</sup>, 가오슝항<sup>63)</sup>, 타이중항<sup>64)</sup>, 타이베이항<sup>65)</sup>, 타오웬 공항<sup>66)</sup>에 자유무역단지를 운영하고 있음

59) 가공수출단지 관리처 <http://www.epza.gov.tw/english/index.aspx>

60) <http://www.epza.gov.tw/uploads/files/150265d8-58a7-48f4-b171-4e9d3c0416cd.pdf> 참조

61) 가공수출단지 제품에 대한 환급 및 제품 전시 연장, 검사 등에 관한 신청은 대만 관무서 홈페이지 <http://eweb.customs.gov.tw/lp.asp?ctNode=11188&CtUnit=965&BaseDSD=31>에서 해당항목 확인 후 신청

62) 지룽항 자유무역단지 <http://www.klhb.gov.tw>

63) 가오슝항 자유무역단지 <http://www.khb.gov.tw>

64) 타이중항 자유무역단지 <http://www.tchb.gov.tw>

65) 타이베이항 자유무역단지 <http://www.tpport.gov.tw>

66) 타오웬공항 자유무역단지 <http://www.ftz.com.tw>

- 자유무역단지에 입주 시 해외로부터 수입한 원료, 연료, 반제품, 기계설비에 대해 수입관세, 물품세, 부가가치세, 무역진흥서비스비가 면세됨

## 2)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제도

- 관세법 제49조, 50조, 및 51조에서 면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함
  - 총통, 부총통의 공무용 물품
  - 주대만 외교기관 및 직원이 수입하는 공무용 혹은 사적물품
  - 외교기관의 우편물 및 대만 외교원의 휴대물품
  - 군수물자(군사기관, 부대에서 수입하는 무기, 장비 등과 같은 물품)
  - 구제물품(정부, 공익단체에서 구제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
  - 교육용품(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에서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훈련, 시합용 스포츠 용품)
  - 외국 정부 혹은 기관·단체에서 수여받은 훈장 및 기타 상품
  - 공문건 혹은 사문건 및 기타 상업적 가치가 없는 서류 혹은 책자
  - 포스터나 판넬과 같은 홍보용 물품 및 샘플
  - 대만 어선이 해외에서 어획한 수산물
  - 좌초된 어선, 항공기 및 기재
  - 노후되었거나 혹은 기타 원인으로 해체된 화물선
  - 국제 무역이 운반 수단이 되는 선박, 항공기 전용 연료
  - 여행객들의 휴대물품
  - 수량 및 금액한도(3,000대만달러) 이하의 소포화물
  - 방역 용품 및 조난 구조기기
  - DPV(Duty Paying Value)가격이 3,000대만달러 미만의 수입품
  - 대만 국적의 선원이 회항할 때 휴대한 물품
- 관세법 제50조에서는 손실, 변질, 손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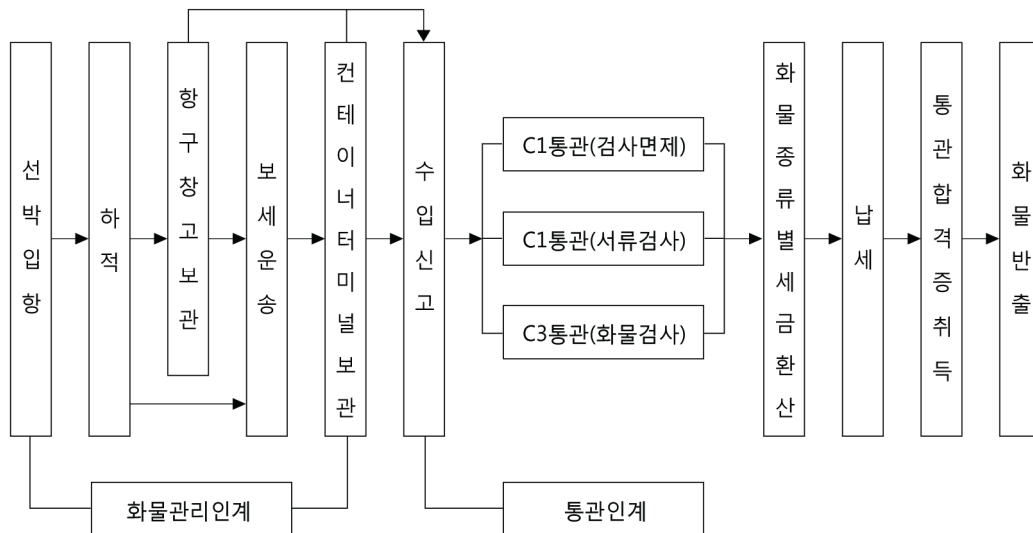
- 운송 도중에 손실, 변질, 손상되어 수입 물품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
- 검역 이전에 천재지변, 사고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손실, 손상되어 수입물품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
- 인위적으로 유발되지 않은 손상, 부패로 인해 수입물품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
- 화물교부 전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반송 신청을 하여 세관의 비준을 얻은 경우
- 자연적인 요소로 인해 수입물품의 수량, 질량 등이 감소한 사실을 세관에 인정받은 경우

□ 관세법 제51조에서는 관세를 부과한 수입화물이 손상되거나 품질 혹은 규격 등이 기존 계약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때 혹은 해외 수출업체에서 배상 혹은 반환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미 관세를 납부하여 화물 교부 승인을 받았지만 교부 전에 손실 및 손상을 입어 수입물품이 무가치하게 되거나 인위적인 요소로 인해 수입물품의 수량, 질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환급이나 면세 신청을 할 수 없음
- 또한 검역 시 도난, 포장 불량, 취급 소홀, 통관 연기로 인해 발생한 손상과 부패로 수입물품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 환급이나 면세 신청을 할 수 없음
- 그 밖에도 세관에서 교부받은 검역 면제대상 물품이 손상 혹은 부패되거나 자연적인 요소로 감소하여 무가치하게 된 경우 또한 관세 환급 신청이 불가함

## 2. 수입통관 절차<sup>67)</sup>

[그림 Ⅲ-5] 대만의 수입통관 절차



자료: 대만 해관실무(2006), KOTRA,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2012)

- 수입통관 절차는 크게 ① 물품 반입 및 수입신고 → ② 물품검사 → ③ 세금 납부 → ④ 물품 반출 및 관세 환급의 4단계로 분류할 수 있음
- 대만의 수출입 관련 업무는 세관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관세법 제10조 1항<sup>68)</sup> 및 3항<sup>69)</sup> 그리고 재정부의 화물통관자동화 실시방안을 기준으로 함
  - 항공화물 통관 자동화는 1992년, 해운항공화물 통관 자동화는 1994년 그리고 국제 인터넷망 통관작업은 항공의 경우 2004년, 해운의 경우 2005년에 개시됨
- 수입신고는 서면 및 인터넷 모두 가능하며 수입화물 도착 후 15일 내 수입 신청을 완료해

67) <http://etaipei.customs.gov.tw/ct.asp?xItem=20945&CtNode=14129>

68) 모든 수출입 업무는 세관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및 전송함. 수출입신청, 운수창고 화물집산지 및 기타 통관 업무는 컴퓨터 연결 또는 전자서류 전송 등의 방식으로 처리함

69) 자동화 시스템 연결 또는 등기, 신청절차, 그 관리 및 기타 관련 사항은 재정부의 '화물통관자동화 실시방안'을 기준으로 함

## 야 함

- 인터넷 연결방식의 통관은 인터넷 자료 전송일을 기준으로 하고 서면 양식의 경우 서면 자료 도착일을 기준으로 함

- 수입신고는 납세의무자(The duty-payer of customs duty)가 직접 해관에 가서 신고하는 직접신고와 수입신고 및 납세 등의 수속을 관세사(Customs broker)가 대행하는 위탁신고 방식이 있음

- 수입신고는 대만 수입업체 및 관세사가 모두 할 수 있으나 수하인이 수입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통관 자체가 불가능함

- 수입자는 중화민국해관수입세칙에 의거해 수입상품에 대한 세칙과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입해야 하며 대만 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여 관세율 산정을 돕고 있음<sup>70)</sup>

- 사전품목분류 심사 시에는 사전품목분류 신청서<sup>71)</sup>, 카탈로그, 매뉴얼, 성분표, 감정보고서, 가공제조설명서, 조작방법 및 원리, 사진이나 도안, 샘플<sup>72)</sup> 등을 구비해야 함

- 통관 전용 사이트<sup>73)</sup>에 연결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 INVOICE, B/L(D/O) 또는 기타 관련 자료를 세관 규정 방식에 따라 입력 후 전송하며 전송 후 15분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통관 전용 사이트에서 해당 수입품의 수입방식이 선별되며 수입통관 과정을 검색할 수 있음

- 수입신고 사이트의 접속은 수입자가 IC증명 카드(Certificate IC Card)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함<sup>74)</sup>

---

70) 관무부 세칙처 문의전화 886-2)2550-8184

71) [http://web.customs.gov.tw/rate/rate/tariff\\_pre\\_line1.doc](http://web.customs.gov.tw/rate/rate/tariff_pre_line1.doc)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72) 샘플의 경우 심사 후 반환신청이 가능함

73) 수입신고 전용 사이트 <http://asp.customs.gov.tw/RcvQueryBulletin.do?command=query&beginDate=&endDate=&userName=test>

74) IC증명 카드 발급 신청 및 기타 내용은 <http://moica.nat.gov.tw/html/en/index.htm> 참고

-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sup>75)</sup>를 비롯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2부, 화물인도지시서 혹은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리스트(Packing list)<sup>76)</sup> 1부, 선적예정목록(Container Loading list)<sup>77)</sup> 1부, 원산지 증명서<sup>78)</sup>를 제출해야 함
  - 그 밖에도 위탁신고의 경우 위임장 1부, 수입제한 항목의 경우에는 수입허가증 원본(Import Permit), 카탈로그, 제품명세서, 수입자동차 신고사항명세표(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등을 제출해야 함
    - 수입허가증의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등록된 수출입 업체나, 해운, 항공, 국제택배 등 수입제한 품목 외 FOB<sup>79)</sup>조건 2만달러 이하인 물품의 경우 면제됨<sup>80)</sup>
- 물품이 반입되면 관세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중 일부 검사 면제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함
- 검사 시에는 수출입 화물 검역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입상품에 대한 포장리스트, 선적예정목록, 팸플릿, 설명서, 상세도(설계도), 공중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 검사는 C1(서면 서류 심사 면제 및 화물 검사 면제), C2(서면 자료 심사), C3(서면 자료 및 화물 검사 후 통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수입신고인이 세관의 검역부문에 검사를 신청하면 검사원들은 신고인이나 화물주와 함께 화물이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문건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화물을 검

75) 수입신고서 복사본 신청은 <http://eweb.customs.gov.tw/public/Attachment/7101813412871.doc>에서 다운

76) 벌크 및 단일 박스 포장일 경우 제출이 불필요하나 2박스 이상일 경우에는 그 명세를 제출해야 함

77) 1개 컨테이너를 사용할 시에는 제출이 불필요하나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제출해야 함

78) 수입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수입물품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통관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79) FOB(Free On Board)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

80) 그 밖에 정부기관 또는 공영사업, 입국여행 및 선박 항공기 서비스요원 휴대 수하물, 인도적 구제 물자, 각국 대사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 및 자가 용품, 증여용으로 소량 수입되는 경우, 사립초등학교 이상 학교 입안건에 대해서는 면제됨

## 사함

- 검사는 수입신고서<sup>81)</sup> 내용과 실제 화물의 일치 여부, 화물 외부의 표기 및 번호 조사, 수입신고서상의 수량 대조, 물품명이나 상표, 규격, 상품번호, 원산지, 수량, 중량 등을 검사함<sup>82)</sup>
- 일반적으로 화물 중 일부를 지정하여 발췌해 검사하며 보통 화물의 10%를 발췌하여 그 물품이 수입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할 때 나머지 90%에 대해 일치한다고 판정함
-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입상이 홍콩, 마카오, 일본, 한국,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한 화물이거나 해외에서 반송되어온 수출품,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갖춘 비밀 안건, 입국 여행객들의 물품은 수입물품 전량을 검사함
- 물품 반출은 대만 세관에서 가장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세금의 완납 여부 및 금액의 오차 유무, 미납 혹은 연체된 세금 유무 및 연체에 따른 과태료, 검사 시 요구 서류 구비, 세관 규정 위반 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함
- 환급에 대한 행정은 관무서의 보세 및 세금환급처 제3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원료 수입업체와 가공생산업체, 그리고 완성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수입관세를 비롯하여 물품세 및 부가가치세 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품에 대한 세금 환급은 해당 수출품의 원료를 수입한 다음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을 초과할 경우 세금환급이 불가능함<sup>83)</sup>

81) 수입신고서는 <http://eweb.customs.gov.tw/ct.asp?xItem=32152&CtNode=14100>에서 다운

82) 수입 및 수출신고의 오류 정정 신청서는 <http://eweb.customs.gov.tw/public/Attachment/35209463771.doc>에서 다운

83) 환급신청 주소가 바뀌었을 시에는 <http://eweb.customs.gov.tw/ct.asp?xItem=47237&ctNode=11188>에서 변경

- 수출품의 수출 시기는 원료 수입 후, 세금환급 신청기간 전이 됨
  
- 관세환급 신청 시에는 세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함
  - 수출품 세금환급 신청서(甲, 乙, 丙 양식이 있음)<sup>84)</sup>
  - 세금환급용 수입신고서 사본
  - 수출품의 사용 원료 및 해당 원료 공급업체에 대한 자료
  - 세금환급 동의서
    - 원료 수입업체의 경우 수출업체의 세금환급 동의서
    - 완성품 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의 세금환급 동의서
    - 완성품 수출업체의 경우 원료 수입업체의 세금환급 동의서

### 3. 수출통관 절차<sup>8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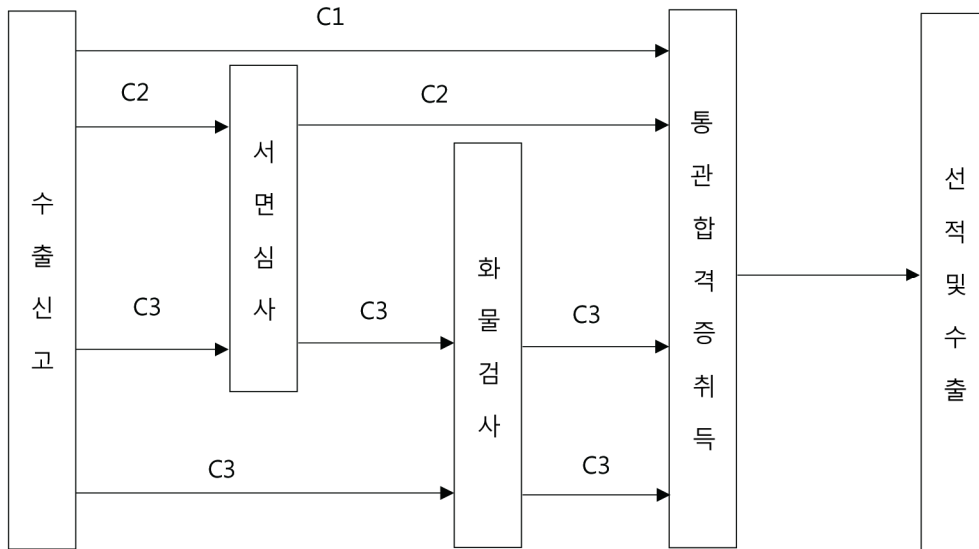
- 수출 시에는 수출신고서<sup>86)</sup>,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포장명세서, 수출허가증, 상업송장, 수출화물 입고 증명, 위임장, 설명서 또는 도안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출신고와 수출 적화목록이 일치하면 수입 시와 마찬가지로 C1, C2, C3로 나뉘어 검사가 이루어지며 C2, C3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출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84) 신청서는 <http://eweb.customs.gov.tw/ct.asp?xItem=32152&CtNode=14100> ->Tax Refund에서 다운

85) <http://etaipei.customs.gov.tw/ct.asp?xItem=21269&CtNode=14131>

86) 수출신고서는 <http://eweb.customs.gov.tw/public/Attachment/35209463771.doc>에서 다운

〈그림 Ⅲ-6〉 대만의 수출통관 절차



자료: 대만관무서,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2012

- C3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자는 FOB가격이 5,000달러 이상일 경우 1,300대만달러를 추가 검사비로 납부해야 하며 5,000달러 미만일 경우 650대만달러를 검사비로 납부해야 함<sup>87)</sup>
  - 동일 수출자가 함께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 여러 건의 수출신고를 하였을 시에 검사 는 한 번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추가 검사 요금은 전체를 한 건으로 처리하여 납부함
- 수출 시 부과되었던 요금을 이중송금(duplicate payment)했을 경우 일정한 서식을 작성 하여 세관에 요청하면 환급됨<sup>88)</sup>

87) <http://etaipei.customs.gov.tw/ct.asp?xItem=21269&CtNode=14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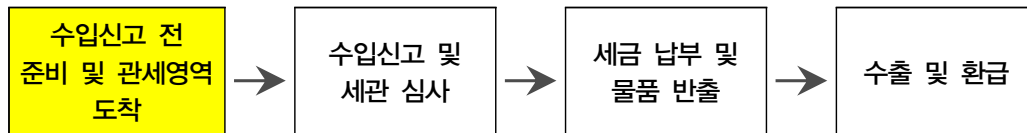
88) 신청은 <http://eweb.customs.gov.tw/ct.asp?xItem=47167&ctNode=11188>에서 가능

## IV.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표 IV-1〉 대만 통관 절차별 유의사항

단 계	유의 사항
1. 수입신고 전 준비 및 관세영역 도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려울 때에는 사전품목분류심사제도를 통해 분류를 받는 것을 권장함</li> <li>○ 2012년부터 섬유제품 359종에 대해 수입통관 검사 및 상품안전마크 부착이 의무화되므로 미리 해당 상품의 검사 필요 유무를 확인해야 함</li> <li>○ 상품검험법에 따라 수출입되는 모든 농·공산품에 대해 BSMI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별 품목을 확인해야 함</li> <li>○ 라벨 부착 대상 품목에는 증문으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li> </ul>
2. 수입신고 및 세관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는 C1(서면 서류 심사 면제 및 화물 검사 면제), C2(서면 자료 심사), C3(서면 자료 및 화물 검사 후 통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짐</li> <li>○ 검사 시 C1에 해당되더라도 원칙상 서류 및 검역이 면제되나 제한적 상황인 경우에는 세관원의 요청에 따라 선행 통관일 익일부터 3일내 보완 자료를 발송해야 함</li> <li>○ 세관에서는 수입 시 물품을 일반(G), 저위험(L), 고위험(H)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수입상의 위험 또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li> <li>○ 통관 인터넷 미연결자는 수입신고 시 화물인도지시서를 별도로 세관에 제출해야 함</li> </ul>
3. 세금 납부 및 물품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반출 시 세금의 완납 여부 및 금액의 오차 유무, 미납 혹은 연체된 세금 유무 등 세관규정 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함</li> <li>○ 물품별로 품목세율이 다르므로 미리 유의해야 함</li> <li>○ 특정 사치품 및 차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비롯한 기타 세금이 합계가 일정 금액에 달했을 경우 10%의 특종화물 및 노무세가 추가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함</li> </ul>
4. 수출 및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환급 신청 시 세금환급용 수입신고서 사본의 매 페이지마다 수입업체의 회사 도장 및 책임자의 도장을 날인해야 함</li> <li>○ 수입업체는 원칙적으로 수출업체의 세금환급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 세금환급 신청서(甲 양식)에 도장 날인으로 대체가 가능함</li> <li>○ 수출품의 원자재 수입관세는 원자재 반입일 익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나 특수 상황인 경우 단 1회, 1년에 한해 재연장이 가능함</li> <li>○ 세금환급 가능 품목이지만 세금환급 금액을 산출하였을 시 수출품의 FOB가격의 1%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음</li> </ul>

## 1. 수입신고 전 준비



###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정확한 품목분류가 애매하거나 어려울 때에는 사전품목분류심사제도를 통해 분류를 받아야 함
- 운송업체, 관세사, 보세창고,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센터 등에서 수출입 통관업무 대행 시 세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관의 경고 및 6,000~30,000대만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함
  - 연속 3차 처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통관대행 업무가 정지됨
- 대만은 2013년부터 단일 창구화(CMT, Customs-Maritime-Trade)를 실시하여 수출입 처리비용을 절감할 예정임<sup>89)</sup>
- 단일 창구화 계획에 맞춰 재정부는 2013년부터 화물정보 사전신고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sup>90)</sup> 제도 실행 시 수출국에서는 화물선적 후 화물에 대한 정보를 수입 후 세관에 전송해야함

### 나. 업무상 유의점

- 중국제품을 제3국(동남아 혹은 대한민국)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을 제한하고 있

89) 대만 재정부, 2011

90) 대만 재정부, 2011

으므로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거래 전 업체의 신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함<sup>91)</sup>

- 대만은 국제기구의 참여가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못해 국제인증을 취득하였다도 현지 검사 혹은 검역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함<sup>92)</sup>
- 대만은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이 허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 한국의 미용용품 수출기업이 모방상품을 판매하는 대만인 19명을 2004년도에 대만 지검에 고발하였으나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며 소극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대만으로 물품 수출 전, 해당 품목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규제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덤핑방지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수입자는 통관을 위해 예상치 못했던 높은 세금을 내야 하거나, 현지 수입상이 수입을 거절할 경우 물품이 한국으로 반송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함
- 한국무역협회 통상·수입규제 홈페이지<sup>93)</sup>에서는 세계 각국의 통상 현안을 비롯하여 국가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정보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무역협회 기본 홈페이지에서는 하단 ‘사업별 사이트’ 메뉴 중 ‘통상수입규제’로도 접속 가능함
  - 현재 대만이 반덤핑관세 등의 규제를 하는 품목 확인을 위해서는 ‘KITA 통상·수입규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수입규제현황’ → ‘주요 국제소 및 규제내역’ → ‘아시아’에서 대만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음
    - 또한 ‘수입규제현황’ → ‘국가별 현황’에서는 필요 정보 지정 후 검색 기능을 통해 영

91) 경제부 무역국 수출입업체 검색 시스템 <https://fbfh.trade.gov.tw/eai99/> 참조

92) 외교통상부(2011), 「분야별 통상환경」

93) KITA, 통상·수입규제 <http://antidumping.kita.net>

문 품명과 정확한 HS 코드 등 보다 세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그 외에 WTO에서 반기별로 공개하는 국가별 규제동향도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는 '통상·수입규제' 사이트 상단 메뉴 중 '각국 규제동향'에서 확인 가능함

□ 2012년부터 의류를 위주로 한 섬유제품 359종에 대해 수입통관 검사 및 상품안전마크 부착이 의무화되므로 품목분류 및 관세율 확인 시 미리 해당 상품의 검사 필요 유무를 확인해야 함<sup>94)</sup>

□ 대만은 2005년부터 모든 의료기기 수입 시 대만 위생서로부터 QSD(Quality System Documentation)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절차가 까다로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므로 유의해야 함

○ QSD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비용은 약 670달러(2만대만달러)정도이며 인증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나 6개월 이상 소요됨

○ 대만에서 의료기기를 수출할 시 일반적으로 수입 대리업체를 통하는 것이 좋으며 대리업체에서 수입인증을 받게 됨

□ 원유 및 그 제품들의 경우 에너지자원 보유국의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대만 내로 수입이 가능함<sup>9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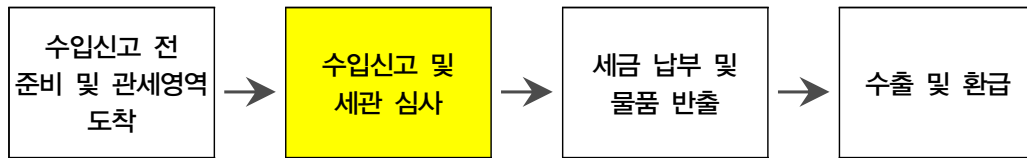
□ 한국에서 수입한 사과와 포도 등의 포장상자에 과일의 명칭, 포장 공장명, 혹은 번호 및 'To Taiwan'이라는 글씨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다면 구멍 크기가 1.6mm인 그물로 덮거나 밀폐식 도구로 운반하여야 함<sup>96)</sup>

94) Global Window, 「해외시장정보-대만」

95) 외교통상부(2011), 「외국의 통상환경-대만」

96)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2012

## 2. 수입신고 및 세관 심사



###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통관 인터넷 연결업자의 경우 운송업체에서 자동적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별도로 제공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통관 인터넷 미연결자는 수입신고 시 화물인도지시서를 별도로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대만 세관에서는 물품 수입 시 그 등급을 일반(G), 저위험(L), 고위험(H)로 분류하고 있음
  - 매번 세관에 수입품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인수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검사 여부 및 필요한 테스트, 발취수량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며 따로 수입상을 분류해 놓는 것은 아님<sup>97)</sup>
- 검사 시 C1에 해당되더라도 제한적 상황인 경우에는 원칙상 서류 및 검역 면제이나 세관원의 요청에 따라 선행 통관일 익일부터 3일내 보완 자료를 발송해야 함
- 수입물품이 실린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 수속을 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당 200대만달러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함<sup>98)</sup>
- 입항일로부터 36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해당 수입물품을 세관에서 판

97)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수입상에 대해 위험을 관리하고는 있으나 그 기준과 과정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매 검사마다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음

98)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2012

매해 세금과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세관에서 보관함. 수입업자가 5년 내에 선하증권 및 기타 증명서류를 첨부해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음

- 대만은 화물자동화 검사시스템을 도입하여 통관의 신속화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화물 봉인 대신 컨테이너 위치 및 개폐 여부를 모니터할 수 있는 전자봉인방식을 사용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음
- 원칙적으로 위임서는 서면상에 통관 대리인과 납세 의무인이 공동으로 서명해야 하나 인터넷 이용 통관자에 한해서 서면자료 보완 시 위임서의 통관 대리인 혹은 관세사의 인장 날인이 면제를 허가함
  - 그 밖에도 보세창고 및 물류센터, 세관직할 가공구역, 보세공장 및 가공 수출구역 내 사업, 세관이 허가한 선박 근처 검사 및 방출안건, 선반출 세금납입 후 담보안건, 세관 직할 농업 과학원 및 공업 과학원의 경우에 장기위임서 첨부가 면제됨
- 원산지 증명의 경우 환물의 원포장의 원산지표기가 선적서류 내용과 비교하여 부합해야만 기타 원산지 증명자료 요청이 면제되며 의의가 있을 시 세관은 원산지 증명문건 혹은 샘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sup>99)</sup>
- 수입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자료가 부족할 시 세관은 공공기관에 협조의뢰를 할 수 있으나 20일 내 서면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의 자료를 이용하여 원산지를 인정함
- 원산지 인정기간은 2개월이며 물품 검역기간은 단 1회에 한하여 2개월로 연장될 수 있음<sup>10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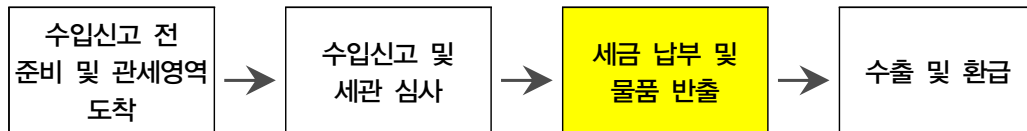
99) 특정 샘플, 검사, 재포장에 대한 신청서는 <http://eweb.customs.gov.tw/ct.asp?xItem=32152&CtNode=14100>에서 다운

100)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2012

나. 업무상 유의점

- 수입신고 내용과 실제 품목, 또한 제출 서류상의 기재사항(수입자와 수량, 중량, 품명, B/L 번호 및 컨테이너 번호 등)이 상호 정확히 일치하여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함
  - 화물 검사 시, 서류 및 신고한 내용과 실제 화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밀수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서류와 물품 일치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수출입신고, 운수창고, 컨테이너터미널 등 통관 업무자가 통관자료를 세관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세관의 경고 및 6,000~30,000대만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수입품 검사 회피 및 서면서류 제출 거절 시에는 3,000~30,000대만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징수되며 연속 거절자는 연속으로 처벌받음
- 대만 표준검사국에서 2012년 10월 발암물질 성분이 검출된 완구류를 적발하면서 수입 완구류에 대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함

3. 세금 납부 및 물품 반출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수납방식은 현금 지불, 인터넷상에서 자동 지불, 세금 후불 실시 규정에 따른 수입 화물

선반출 및 담보 제공 후 대금 지불 방식, 거래은행이 세관전용 입금계좌 및 국고 입금계좌로 송금을 대행하는 방식의 4가지가 있음

- 통관관련 비용은 관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수입품에 한해 관세 및 특별 관세를 제외하고 세관이 일괄대리 수납하고 있음
  - 수입품의 경우 수입세금 수납 시 무역진흥서비스비용도 함께 수납해야 함
- 수입신고 수리 및 관세 납부(담보제공)가 이루어진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 가능함
  -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물품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혹은 납부기한 내에 관세 납부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반출이 불가능함
  - 수입관세가 일부 면제되는 일시적 수입절차에는 적용을 배제함
  - 제한 또는 금지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 세관은 신고서의 항목이 확인되거나 혹은 확인될 필요가 없을시 접수 직후 바로 통관함
- 판매가 불가하고 폐기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의 감시하에 자체 폐기처분을 해야 하며 폐기완료일까지 미처리한 경우 세관이 소각 및 폐기처리한 후 그 관련 비용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킴
- 물품반출 시 세관 규정의 위반 유무가 확인된다면 잠시 물품의 반출을 유보하는 수속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불법 수입물품은 경매되어 국고로 귀속되고 그 물품의 관세, 창고비, 하적비 등의 기타 부대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

#### 나. 업무상 유의점

- 관세를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0.05%의 관세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

세에 연체일수 그리고 0.05%를 곱하여 계산함

- 관세는 납세증(Duty Memo)이 발송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물품세 또한 제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일마다 1%씩 추가되고 최고한도는 15%임

- 대만에서 수입하는 특정한 사치품, 차량 등의 세금 및 관세 합계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 특종화물 및 노무세(特種貨物及勞務稅)가 추가 징수됨<sup>101)</sup>
  - 자동차, 유람선, 헬리콥터, 비행기의 경우 300만대만달러 이상일 때, 가구, 산호, 상아, 피혁 등의 상품은 50만대만달러 이상일 때 10%의 세금이 추가 징수됨<sup>102)</sup>
- 수입 불가 물품이 관세 및 보증금을 납부한 후 선반출된 경우, 납세 의무자에게 신속히 반송 통보를 해야 하고, 이미 반송이 불가능하다면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며 그 보증금이 물품 대금보다 적을 경우 추징금을 부과함
- 특별허가가 필요한 수입물품에 대해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반출할 시에는 담보를 설정해야 함<sup>103)</sup>
- 비허가 물품일 경우 세관의 2개월 내 반송 명령에 납세의무자가 물품권 포기서<sup>104)</sup>에 서명하거나 불법으로 반송처리하면 세관은 화물을 몰수하여 경매하며 획득한 금액은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귀속됨

101) 원문은 [http://www.dot.gov.tw/dot/home.jsp?mserno=200912140005&serno=200912140019&menudata=dotmenu&contlink=ap/hotdiscuss\\_view.jsp&dataserno=201103100000](http://www.dot.gov.tw/dot/home.jsp?mserno=200912140005&serno=200912140019&menudata=dotmenu&contlink=ap/hotdiscuss_view.jsp&dataserno=201103100000) 참조

102) <http://www.kati.net/ebook/taicustoms/taicustoms.html>

103) 물품에 대한 담보 신청은 <http://eweb.customs.gov.tw/ct.asp?xItem=47164&ctNode=11188>에서 가능

104) 물품 포기각서는 <http://eweb.customs.gov.tw/ct.asp?xItem=32152&CtNode=14100>에서 다운 가능

#### 4. 수출 및 환급



#####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해당 수입원료가 세금환급 취소대상인지 알기 위해서는 관세율 검색시스템 혹은 대만 세관에 문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 관세율 검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품목을 검색한 후 특별 규정란에 R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 세금환급이 불가능하며 R\*가 표시되어 있는 품목은 일부 세부 품목의 세금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 관세 환급 신청 시 세금환급용 수입신고서 사본의 매 페이지마다 수입업체의 회사 도장 및 책임자의 도장을 날인해야 함
- 수입업체 또는 원료 수입업체는 원칙적으로 수출업체의 세금환급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 세금환급신청서(甲 양식)에 도장 날인으로 대체가 가능함
- 세금환급 가능 품목이지만 세금환급 금액을 산출하였을 시 수출품의 FOB가격의 1%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음
- 기납부된 수입관세는 수입물품이 수입 후 1년 내 판매사용 금지규정으로 금지일 익일부터 6개월 내 반송 혹은 폐기처분되었을 때 반환됨
- 또한 세관 반출 이전에 수입자가 이미 반송 신청 및 허가를 받았을 경우 물품반출 이전 천재지변, 사고, 불가항력으로 인해 물품이 가치를 잃었을 경우 기납부된 관세는 반환할

수 있음

- 납세자가 임시 통관증을 이용하여 수출입한 후 임시 통관증 만료일 이내 원상태 물품을 재수출입할 경우 면세되며 그 기간이 초과될 시에는 정상적인 납세를 해야 함
- 법정 면제품 및 기타 재정부가 수입허가를 한 비매품은 수출일 익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재정부가 허가한 기간 내 수출하거나 원상태로 반입할 경우 관세가 면제됨
  - 이때 수출신고서상에 품명, 브랜드명, 규격 및 수량, 반입기한 내 준수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함

#### 나. 업무상 유의점

- 수출품의 원자재 수입관세는 원자재 반입일 익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나 특수 상황인 경우, 단 1회 1년 내에서 재연장이 가능함
- 수입원료가 재정부에서 지정한 세금환급 취소 품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안 되므로 미리 대만 세관에 해당 원료의 세금환급 취소 가능 여부를 문의하거나 관세율 검색시스템을 활용해야 함
- 관세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과소·과다 납부 및 과소·과대 환급이 발생했을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관세를 추징 혹은 환급 통지하고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추징 납부를 하거나 환급신청을 해야 함
  - 추징납부 및 환급기간은 1년이고, 완납일·납부기한일 또는 세관에서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추징 혹은 환급일까지 해당 금액에 대해 우체국의 정기예금 고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함께 징수 혹은 환급해야 함
- 과소 혹은 과대 환급이 경우에는 세관의 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자를 포함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0.005%의 과태료를 납부

해야 함

○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강제적으로 환급이 집행됨

- 수출품의 경우 무역진흥서비스비용은 분기별로 세관에서 납세증을 발부받아 발부일로부터 14일 내 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납세증을 유실했을 시에는 재 발부를 요청해야 함
- 수출 시 수출업자는 모든 선적을 한꺼번에 진행하거나 모든 화물을 휴가일 하루 전에 수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2011 외국의 통상환경』, 2011, 2.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2012.

The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4*, 2014.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13, 3.

관세무역개발원, [www.custr.com](http://www.custr.com)

대만 관무서, [eweb.customs.gov.tw](http://eweb.customs.gov.tw)

대만 관세청, [etaipei.customs.gov.tw](http://etaipei.customs.gov.tw)

대만 경제부 표준검사국, [etaipei.customs.gov.tw](http://etaipei.customs.gov.tw)

대만 상공회의소, [www.taiwanchambers.net](http://www.taiwanchambers.net)

대만 재무부, [www.mof.gov.tw/engweb](http://www.mof.gov.tw/engweb)

대한민국 관세청,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만 KBC,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http://www.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정보서비스, [www.global.korcham.net](http://www.global.korcham.net)

미국 무역대표부, [www.ustr.gov](http://www.ustr.gov)

세계무역기구, [www.wto.org](http://www.wto.org)

세계은행, [www.doingbusiness.org](http://www.doingbusiness.org)

외교통상부, [www.mofat.go.kr](http://www.mofat.go.kr)

전 세계 FTA 현황, [www.bilaterals.org](http://www.bilaterals.org)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원, [www.tbt.kr](http://www.tbt.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http://www.kita.net)

해외진출 정보시스템, [www.ois.go.kr](http://www.ois.go.kr)

## 부록 I. 비즈니스 팁

- 대만 바이어들은 미국 및 일본 제품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제품보다 50~85% 정도의 가격 선에서 거래를 희망함
  - 대만 바이어와 상담할 때는 일본, 미국 관련제품과 품질을 비교 분석한 자료 및 대일, 대미 수출실적 등을 제시하여 한국산 제품이 품질상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음
  
- 대만 바이어들은 상품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부분 독점 에이전트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선뜻 독점권을 줬다가 이후에 실적 부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가능한 복수의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 좋음
  
-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시장의 특성상 소량 주문이 많은 편임
  - 한번 거래를 맺으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들로서는 소량 주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함
  
- 대만 바이어들은 통상 L/C 또는 T/T로 대금을 결제하므로 대만 바이어와 거래 시 대금결제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그러나 소액거래의 경우에도 FOB, CIF 등 거래조건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 대만 업체와 거래 시 반드시 모든 항목에 있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함. 주문량, 선적시기 등과 같이 숫자가 들어간 항목에 있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대만은 중국과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하여 수출입 거래 시 대만 바이어를 '차이니스' 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민감할 수 있으므로 '타이와니스' 라고 명명해야 함
- 음력 7월을 '귀신의 달' 이라고 칭하며 귀신이 떠돈다고 믿으므로 결혼이나 이사뿐 아니라 매매계약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대만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므로 대만 업체와 미팅 약속이 있을 시에는 10분 먼저 약속장소로 가는 것이 좋음
- 한국 요리뿐 아니라 일본 요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므로 미팅 시 참고해야 함
- 일반적으로 대만, 중국, 홍콩 등을 포함한 중화권에서는 시계, 우산, 손수건, 부채, 칼, 가위 등이 공통적으로 금기되는 선물임
  - 국화꽃과 글라디올러스는 장례와 성묘 시에 사용되는 꽃이며, 수건 또한 장례식에 조문은 손님에게 주는 선물이므로 주의해야 함
-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流(흐를 류)와 발음이 같은 숫자 6과 돈을 번다는 뜻의 發(파)와 발음이 유사한 8이 가장 좋은 숫자이며 특히 8은 돈과 관련되어 좋아함
  - 3의 중국어 발음은 흠어지다, 분산되다는 뜻의 散(산)과 발음이 같아 기피하는 숫자이며,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4의 발음이 죽을 사(死, 쓰)와 같기 때문에 가장 기피함
  - 5: 5(無)의 중국어 발음은 우로 없을 무(無, 우)자의 발음과 같아 선호하지 않음
  - 7086(치링바류), 5354(우산우쓰) 등의 숫자 또한 기피하는데, 이들 발음이 각각 七零八落(치링바뤄, 산산조각나다)와 呑散(우산), 呑死(우쓰)와 유사하기 때문임
- 숫자 중 홀수는 피하고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축의금이나 꽃 등을 전달할 때에도 짝수로 맞추는 것이 좋음

- 중국어 호칭으로는 남성에게는 성 뒤에 先生(셴셴)을 붙이고, 여성에게는 성 뒤에 小姐(샤오제)를 붙이는 것이 가장 보편적임
  
- 중요한 미팅을 할 때는 양복을 입고 타이를 착용하므로 너무 편안한 복장은 지양해야 함

## 부록 Ⅱ. 주요 유관기관 정보

■ 주대만 대한민국 대사관	
웹페이지	<a href="http://taiwan.mofa.go.kr/korean/as/taiwan">http://taiwan.mofa.go.kr/korean/as/taiwan</a>
주소	台北市 基隆路 一段 333號 1506室 駐台北韓國代表部
전화번호	(886-2)-2758-8320~5
팩스번호	(886-2)-2757-7006
이메일	taipei@mofat.go.kr

■ 코트라 타이베이 무역관(KBC)	
웹페이지	<a href="http://www.kotra.or.kr/KBC/taipei/KTMIUI010M.html?SITE_CD=01005&amp;SITE_SE_CD=1039115">http://www.kotra.or.kr/KBC/taipei/KTMIUI010M.html?SITE_CD=01005&amp;SITE_SE_CD=1039115</a>
주소	Rm.2214, 22Fl., TWTC Int'l Trade Bldg., 333 Keelung Rd., Sec.1, Taipei 105, Taiwan, R.O.C
전화번호	(886-2)2725-2324
팩스번호	(886-2)2757-7240
이메일	kotra.tpe@msa.hinet.net

■ 주타이베이 대표부	
웹페이지	<a href="http://www.taiwanembassy.org/kr/mp.asp?mp=207">http://www.taiwanembassy.org/kr/mp.asp?mp=207</a>
주소	6th Fl., Gwanghwamun Bldg., 149, Sejong-daero, Jongno-gu, Seoul 110-730, Korea
전화번호	02-3992780

■ 가공 수출단지 관리국	
웹페이지	<a href="http://www.epza.gov.tw/english/index.aspx">http://www.epza.gov.tw/english/index.aspx</a>
주소	600, CHIA-CHANG ROAD, NAN-ZIH DISTRICT, KAOHSIUNG CITY 81170, TAIWAN, REPUBLIC OF CHINA
전화번호	(886-7) 361-1212
팩스번호	(886-7) 361-2751
이메일	service@epza.gov.tw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The Bureau of Foreign Trade)	
웹페이지	<a href="http://www.trade.gov.tw/">http://www.trade.gov.tw/</a>
주소	1 Hu Kou Street, Taipei, Taiwan 100-66, R.O.C.
전화번호	(886-2) 2351-0271
팩스번호	(886-2) 2351-7080

■ 대만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웹페이지	<a href="http://www.mof.gov.tw/engweb/">http://www.mof.gov.tw/engweb/</a>
주소	2, Aiguo W. Road Taipei, 10066 Taiwan, R.O.C.
전화번호	(886-2) 2322-8000
팩스번호	Fax: +886-2-23568774

■ 대만 재정부 관무서(Customs Administration)	
웹페이지	<a href="http://web.customs.gov.tw/mp.asp?mp=1">http://web.customs.gov.tw/mp.asp?mp=1</a>
주소	No.13, Tacheng St., Taipei City 10341, Taiwan, R.O.C
전화번호	(886-2)-25505500
팩스번호	(886-2)5508341

■ 대만 경제부 표준검역국	
웹페이지	<a href="http://www.bsmi.gov.tw/wSite/index.jsp">http://www.bsmi.gov.tw/wSite/index.jsp</a>
주소	No.4, Sec.1, Jinan Rd., Taipei City 100, Taiwan(R.O.C.)
전화번호	(886-2)-23431700

■ 타이베이시 수출입협회	
웹페이지	<a href="http://www.ieatpe.org.tw/e_index/index.htm">http://www.ieatpe.org.tw/e_index/index.htm</a>
주소	350,Sung Chiang Road, Taipei, 104, Taiwan, R.O.C.
전화번호	(866-2)25813521
팩스번호	(866-2)25238782
이메일	ieatpe@ieatpe.org.tw

■ 타이베이 관세청	
웹페이지	<a href="http://etaipei.customs.gov.tw/mp.asp?mp=22">http://etaipei.customs.gov.tw/mp.asp?mp=22</a>
주소	No. 21, Hangchin N. Rd., Dayuan Township, Taoyuan County 337-58, Taiwan, R.O.C
전화번호	(886-3)383-4265
팩스번호	(886-3)398-2752

## 부록 Ⅲ. 대만 관세법<sup>105)</sup>

# 관세법 關稅法

민국 97년 06월 04일 개정

목 록

제1장 총 칙

제2장 통관 절차

제1절 통관 및 검사

제2절 완세가격

제3절 납세기한과 행정구제

제3장 세금의 우대

제1절 면세

제2절 보세

제3절 세금의 환급

제4장 특별 관세

제5장 벌칙

제6장 집행

제7장 부칙

---

10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대만 → 관세법

## 제1장 총 칙

**제1조** 관세의 징수와 화물의 통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이 법에서 관세란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수입세를 말한다.

**제3조** 관세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의 수입세칙에 따라 징수한다. 세관의 수입세칙은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하고 공포한다. 재정부는 수입세칙의 개정 및 특별관세의 부과 등의 사항의 연구를 위하여 관세세율위원회(關稅稅率委員會)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조직규정은 재정부가 기초하고 행정원이 결정한다. 필요한 업무인원은 재정부의 법정인원의 범위에서 충원한다.

**제4조** 관세의 징수는 세관이 실시한다.

**제5조** 세관 수입세칙은 특정 수입화물에 대하여 상이한 수량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세율에 대하여 관세쿼터제(關稅配額)를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관세쿼터제의 분배방식, 분배 참여 자식, 수취하여야 하는 권리금, 보증금, 비용 및 그 처리방식에 대한 실시방법은 재정부가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기초하고 행정원이 결정한다.

**제6조** 관세 납세의무인은 수하인, 선하증권 또는 화물소유인이다.

**제7조** 운수수단이 적하한 세금 미납 화물, 보세운수수단이 적하한 화물 및 화물창고, 컨테이너 집산역, 보세창고, 물류센터, 면세점에 저장한 화물에 불법 운송, 유실, 절도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화물이 감소된 경우 업자가 감소한 수입세의 추가 납입을 책임진다.

**제8조** 납세의무인이 법인, 합동인 또는 비법인단체인 경우 해산 청산할 시 청산인은 잔여 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법에 따라 관세, 체납금 및 벌금을 상환 순서에 따라 납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청산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환하지 아니한 대금에 대하여 납입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 연체금 또는 벌금은 확정일의 익일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더 이상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5년 기한이 만료되기

전 법에 따라 이미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전항 기간의 계산은 징수하여야 하는 세금을 확정된 후 분할 또는 기한을 연기하여 납입이 허락된 경우 동 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전 2항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에 준한다.

**제10조** 이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 제출하여야 하는 통관신고서 및 그 밖의 관련 문건을 세관의 컴퓨터와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전자자료의 방식으로 전송하여 처리하고 세관의 컴퓨터 기록에 저장된 경우 이미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출한 것으로 본다. 세관은 화물통관 자동화 실시정황에 따라 경영통관, 운수, 저장, 컨테이너 창고 집산역 및 그 밖의 통관 관련업무의 업자인 경우 컴퓨터 연결 또는 전자자료 전송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 2항의 연결 처리 또는 전송한 등기, 신청절차, 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세관은 각항의 결정, 처분, 통지 또는 결정의 송달을 위하여 컴퓨터 연결 또는 전자자료의 전송방식으로 행한 결과를 컴퓨터에 기록하여야 한다. 세관의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전자자료를 세관에 전송하는 자료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네트워크 사업을 경영하는 업자는 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의 조건, 최저자본금, 운영항목, 수취표준, 영업 시간의 심사 결정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결정한다.

**제11조**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 또는 보증금은 다음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1. 현금
2. 정부 발행 공채
3. 은행 정기예금
4. 신용협작사 정기예금
5. 신탁투자공사의 1년 이상의 일반 신탁증빙
6. 여신기구의 보증

전항의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담보는 세관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관세업무인원은 납세의무인, 화물수출인이 세관에 제출한 각종 통관 자료에 대하여 기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처분한다. 형법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이

송한다. 다만 다음 각항의 인원 및 기관에 제공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인, 화물수출인 본인 또는 그 승계인
2. 납세의무인, 화물수출인이 수권한 대리인 또는 변호인
3. 세관 또는 세금 심사기관
4. 심사기관
5. 세관업무와 관련된 소원, 소송의 수리기관
6. 법에 따라 관세업무 안전을 조사하는 기관
7. 그 밖의 법에 따라 세관에 통관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인원
8. 재정부의 심사결정을 거친 기관 또는 인원

세관이 그 밖의 정부기관에 통계를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의무인, 화물수출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누설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항 제3관에서 제8관까지의 기관 인원이 세관에 제공한 제1항의 자료에 대하여 누설한 정황이 있는 경우 동항의 관세업무인원의 기밀 누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세관은 수출입화물을 통관시킨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후심사를 실시할 것을 통지한 경우 수출입화물을 통관시킨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납세의무인, 화물수출인 또는 그 관계인에게 실시할 수 있다. 만약 환급하거나 추가하여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 사후 심사 결과에 따라 화물통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증거 조사의 필요에 따라 세관은 전항의 사후 심사를 집행하기 전에 납세의무인, 화물수출인 또는 그 관계인에게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기록, 문서, 회의장부 및 컴퓨터의 관련 파일 또는 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세관 사무실에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통지하거나 세관인원이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피조사인은 이를 회피, 방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관계인이란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통관업, 운수업, 창고업, 택배업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세관은 전1항의 사후 심사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기구에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자료 및 기타 문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세관이 사후 심사를 실시하는 범위, 절차, 필요 문서 및 기타 필수 준수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14조** 중계운송, 중계수출하는 화물의 통관 및 관리는 이 법의 수출입 통관 및 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다음의 물품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또는 변조한 화폐, 유가증권 및 위조지폐 문양을 인쇄한 것
2.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
3. 법률이 수입할 수 없거나 수입 금지를 규정한 물품

## 제2장 통관 절차

### 제1절 통관 및 검사

**제16조** 수입화물의 신고는 납세의무인이 화물을 적재한 운수수단이 들어온 날의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에 수속하여야 한다. 수출화물의 신고는 화물수출인이 화물을 적재한 운수수단이 통관 완료 또는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세관에 수속하여야 한다. 통관 검사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전 두 항의 화물을 수출입하기 전에 사전에 신고할 수 있다. 그 사전신고 통관처리준칙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17조** 수입통관 시 화물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선하증권, 영수증, 패킹 리스트 및 그 밖의 수입에 필히 구비하여야 하는 관련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수출통관 시 화물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선적지시서 또는 탁송서, 패킹 리스트 및 규정에 따라 필히 검사하여야 하는 수출허가증 및 그 밖의 관련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패킹 리스트 및 기타 규정에 따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는 수출입 허가증 및 기타 관련 문서는 세관이 통관하기 전에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전항의 문서를 세관이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동 수출입 화물은 위법정황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 이외에도 수출반송 또는 수령반송을 기한부 명령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수출인이 서면으로 포기 또는 세관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수출반송 또는 수령반송을 수속하지 아니할 것을 성명한 경우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또는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는 화물을 통관하기 전에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수출인이 세관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사항의 시정은 이 법 또는 세관밀수검거조례(海關緝私條例)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의 문건 심사, 화물 조사, 조례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밀수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기 전에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수출인이 화물의 통관 후 시정을 신청하고 그 사항의 시정은 이 법 또는 세관밀수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이 조례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밀수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거나 사후 심사를 통지하기 전에 처리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 기한, 심사결정의 근거, 검사하고 첨부하여야 하는 문건 및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18조** 신속한 수입화물의 통관을 위해 세관은 납세의무인이 신고한 사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통관하여 사후 재차 심사할 수 있다. 동 수입화물은 그 납세의무인 또는 관계인이 이미 세관의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후 심사를 이미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송하거나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화물통관일 익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인에게 통지하고 기한이 초과하면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본다. 수입화물을 세관의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 납세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세관이 즉시 그 응납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그에 준하여 납세의무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검사하고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납입하게 한 후 우선 통관하여 사후에 세관이 심사하고 화물통관일 익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응납세액을 확정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면 납세의무인이 신청에 따라 응납세액을 확정된 것으로 본다. 수입화물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 과세 통관할 수 없다. 다만 세관은 납세의무인의 신청에 따라 그에 준하여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납입하게 한 후 우선 통관하여 기한 내에 납세의무인이 추가 수속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한다.

1. 납세의무인이 즉시 관세의 감·면세와 관련된 증명문건을 제출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의무인이 수출허가문건을 신청서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즉시 통관하여 인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만 수입화물이 수입을 허가하는 종류의 화물에 속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3. 그 밖의 세관을 거쳐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통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

우. 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 및 면세할 수 있는 수입화물을 전항 제1관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화물을 수입하여 통관하기 이전 또는 통관 후 4개월 이내에 관세의 감면 및 면세와 관련된 증빙문건을 제출하여 보정을 신청하거나 그 환급하여야 하는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제19조**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수출인이 세관에 상당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그통관하는 특정화물은 우선적으로 통관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한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수출인은 월별로 통관 화물에 대하여 세금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수출인은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특정 신고서, 담보 방식, 신고처리절차, 세금납입 방식, 통관 방식, 적용조건의 정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20조** 여객을 수송하는 운수수단의 수출입 통관은 책임자 또는 그 위탁한 운수수단 소속업자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책임자란 선박은 선장을, 여객기는 기장을, 기차는 기관장을, 그 밖의 운수수단은 동 운수수단의 총괄인을 말한다. 제1항 업무를 경영하는 운수수단의 소속업자는 세관에 등기 및 보증금 납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운수수단의 책임자 또는 그가 위탁한 운수수단의 소속업자는 수출입 통관, 운수업무의 집행 및 운수수단 소속업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보증금액과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수입화물의 세칙별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세관은 전항의 우선 심사하는 세칙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납세의무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고 거래를 진행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을 증명하고 아울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세관의 세칙별 우선 심사의 적용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90일을 기한으로 한다. 다만 변경 후의 세칙이 화물 수입규정에 관련되는 경우 화물 수입 시 관련 수입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의 우선 심사하는 세칙에 불복하는 경우 화물의 수입 전에 재정부 관세총국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정부 관세총국은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절차, 필요한 문서, 세관의 답변 기한 및 재정부 관세총국의 재심처리에 관한 실시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22조** 화물의 통관, 납세 등 수속은 통관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세관에 제출하는 신고서는 전적으로 통관인원이 심사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관업자는 세관의 허가를 거쳐야만이 회사 또는 상업등기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등기 후 관련 문건을 첨부하여 세관에 통관업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통관업자의 최저자본금, 책임자, 중개인과 전문통관인원이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허가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의 신청, 재발급, 통관업무의 처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23조** 세관은 수입, 수출 및 중계수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검사 또는 면제를 실시한다. 필요 시 견본을 채취할 수 있으며 기술 검정에 필요한 양만을 채취하도록 제한한다. 전항의 검사, 견본 추출의 방식, 시간, 장소 및 검사면제 범위는 재정부가 정한다. 제1항의 화물의 검사 시 그 이전, 개봉, 원상 회복 등 사항 및 필요한 비용은 수출입 화물의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수출인이 부담한다. 중계수입인 경우 운수업자가 부담한다.

**제24조** 수출입화물은 세관이 규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하역하여야 한다. 쉽게 부패하거나 위험한 물품 또는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의 비준을 거쳐 하역 시간 및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세관의 통관을 거치지 아니한 수입화물, 세관이 검사하여 밀봉한 수출화물 및 그 밖의 감독관리를 수용하여야 하는 화물은 국내 운송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은 보세운수수단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전항의 보세운수수단 소유인은 세관에 등기 및 보증금의 납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가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보증금 액수와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보세운수도구의 사용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26조** 세관의 통관수속을 완료하지 아니한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비준을 거쳐 잠정적으로 창고 또는 컨테이너 집산역에 저장된다. 전항의 창고 또는 컨테이너 집산역 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기 및 보증금 납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보증금액과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창고와 화물의 저장, 이동, 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27조**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특급화물은 특정 장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전항의 특급화물 통관을 위한 장소의 설치조건, 장소, 특급화물의 종류, 분류, 통관 절차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28조** 세관의 수입화물의 원산지의 인정은 원산지가 인정하는 표준에 따라야 하며 필요 시 납세의무인이 원산지 증명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정 과정 중 분쟁이 발생하면 납세의무인은 화물 주관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인정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고, 그 소요비용은 납세의무인이 부담한다. 전항의 원산지의 인정표준은 재정부가 경제부와 회동하여 정한다.

## 제2절 완세가격

**제29조**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은 동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을 계산의 근거로 본다. 전항의 거래가격이란 수입화물이 수출국이 중화민국으로 판매하는 데 있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수입화물의 실제 지급가격 또는 응납가격은 만약 다음의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완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고용금, 수속비용, 용기 및 포장비용
2. 구매자가 무상으로 또는 인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한 동 화물의 생산 또는 판매에 사용되는 다음의 물품 및 노동에 있어 합리적인 부담을 거친 금액 또는 인하가격
  - (1) 동 수입화물을 구성하는 원재료, 부속품 및 유사품
  - (2) 동 수입화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도구, 금형, 모형 및 유사품
  - (3) 동 수입화물을 생산하는 데 소모되는 재료
  - (4) 동 수입화물의 생산에 있어 국외의 공정, 개발, 공법, 설계 및 유사 노동력
3. 거래 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금 및 보수
4. 구매자가 사용하거나 처분한 수입화물에 있어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5. 수입항구까지의 운반비용, 하역비 및 선적비

6. 보험비용

전항의 규정에 따라 완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객관적이고 측정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객관성이 없고 측정가능하지 아니한 자료인 경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 완세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세관은 납세의무인이 제출한 거래문건 또는 그 내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인이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설명한 후에도 세관이 여전히 합리적인 의문점이 남아 있는 경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 완세가격을 측정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제30조**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완세가격의 근거로 간주할 수 없다.

1. 구매자가 동 수입화물의 시용 또는 처분에 제한을 받는 경우. 다만 중화민국 법령의 제한 또는 동 수입화물의 중계판매지역의 제한에 대하여 또는 그 제한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2. 수입화물의 거래에 부가조건이 있어 그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3. 거래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사용 또는 처분하는 부분의 수익이 판매자에게 귀속되고 그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4.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전항의 제4관의 특수한 관계란 다음 각 항목의 정황 중 하나를 말한다.
  - (1) 구매자, 판매자의 일방이 타방의 중계인, 이사 또는 심사인인 경우
  - (2)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동일한 사업의 파트너인 경우
  - (3)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고용관계인 경우
  - (4) 구매자, 판매자의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타방의 5% 이상의 표결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통제하는 경우
5. 구매자, 판매자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6.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제삼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당하는 경우
7.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공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삼자를 통제하는 경우

8. 구매자, 판매자 쌍방이 배우자 또는 친척 등 내적인 친족관계인 경우

**제31조**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에 있어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동 화물의 수출 시 또는 수출 전, 후에 중화민국에 판매된 동종 화물의 거래가격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확정 시 거래형태, 수량 및 운수비용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전항에서의 동종의 화물은 그 생산국가,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상업적 신용도가 동 수입화물과 상동한 화물을 말한다.

**제32조**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에 있어 제29조 및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동 화물의 수출 시 또는 수출 전, 후 중화민국에 판매한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확정 시 거래형태, 수량 및 운임비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전항에서의 유사한 화물이란 동 수입화물과 비록 완전히 상동하지는 아니하나 단 그 생산국 및 기능이 상동하고 특성 및 구성된 원재료가 유사하여 거래상 호환대체가 가능한 화물을 말한다.

**제33조**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에 있어 제29조, 제31조 및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국내 판매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세관은 납세의무인의 요청에 따라 이 조 및 제34조의 가격 측정의 적용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국내 판매가격이란 동 수입화물, 동종의 또는 유사한 화물이 동 수입화물의 수입 시 또는 수입 전, 후 국내에서 그 수입원상이 첫번째 거래단계이고 특수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 최대수량으로 판매한 단위가격에 따라 확정된 후 다음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 수입화물, 동급 또는 동류의 수입화물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이윤, 비용 또는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고용금.
2. 화물 수입시 납입한 관세 및 그 밖의 세금
3. 화물 수입 후 발생하는 운임비, 보험비 및 그 관련 비용. 국내 판매가격에 따라 확정된 수입화물의 수입 시 또는 수입 전, 후 동 수입화물, 상동하거나 유사한 화물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없는 경우 동 수입화물의 수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 수입화물, 상동하거나 유사한 판매수량이 충분히 동 수입화물의 단위가격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할 시 그 수입원상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최대수량으로 판매한 단위가격에 따라 확정한다.

후 다음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입화물이 원상대로 수입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인의 신청에 따라 동 수입화물의 가공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최대수량으로 판매한 단위가격에 따라 확정된 후 동 단위가격에 가공 후의 부가가치세 및 제3항에서 열거하는 비용을 공제한다.

**제34조**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에 있어 제29조, 제31조, 제33조 및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계산가격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전항에서 말하는 계산가격이란 다음 각 항목의 비용의 총합을 말한다.

1. 동 수입화물을 생산하는 자본금 및 비용
2. 수출국이 중화민국에 동 수입화물, 동급 또는 동류 화물을 생산판매한 정상적인 이윤과 일반적인 비용
3. 수입항구까지의 운임비, 하역비, 선적비 및 보험비

**제35조**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에 있어 있어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조사한 자료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 납세의무인은 서면으로 세관에 그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의 확정방법을 설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세관의 답변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7조** 국외에 운반되는 수리, 설치 및 가공한 화물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완세가격을 확정한다.

1. 수리, 설치한 화물은 그 수리, 설치 소요비용을 계산의 근거로 삼는다.
2. 가공한 화물은 동 화물을 재차 수입 시의 완세가격과 원수출 시 상동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수입 완세가격의 차액을 계산의 근거로 삼는다. 전항의 국외로 운반하여 수리, 설치 또는 가공한 화물은 수출 통관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재차 수입하여야 한다. 만약 사실의 필요로 인하여 기한 만료 전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세관에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이 초과하여 재차 수입하는 경우에도 전액 과세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입화물은 임대 또는 사용비를 부담하고 소유권을 아직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완

세가격은 임대비 또는 사용비에 근거하여 운임비 및 보험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납세의무인이 신고한 임대비 또는 사용비가 현저히 적을 시 세관은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확정할 수 있다. 다만 고정된 임대비 또는 사용비는 매년 화물 자체의 완세가격의 10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비 또는 사용비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수입화물은 임대비 또는 사용비에 따라 관세를 납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총 가치 전액에 대한 관세의 차액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여신기관이 담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화물이 특허 또는 제조상의 기밀로 양도할 수 없거나 또는 특수한 원인으로 재정부의 전문안건에 분류되어 비준을 획득한 경우에 한한다. 제1항의 임대 또는 사용기한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39조**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화물은 그 외환가격을 신대만폐 (NT1)<sup>106</sup>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외환 환산비율은 재정부 관세총국이 외환시장의 당기 환율을 참고하여 정기적으로 공고한다.

**제40조** 전체 기계 및 그 제품 생산의 과정 중 직접적으로 동 기계에 사용되는 필요 설비가 체적의 과다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체, 분산 운반하여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세관이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하여 전체 기계설비의 포함 세칙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그 포함되는 세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제41조** 여러 종류의 물품으로 조합되어 완제품이 되는 화물을 해체, 분산 운반하여 수입하는 경우 기계의 전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화물이 포함되어야 하는 세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제42조** 세관은 수입화물의 정확한 완세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조사인은 회피, 방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 화물의 구매자, 판매자 쌍방의 판매가격과 관련한 기타 문건의 조사
2. 동 화물 및 동종 또는 유사 화물의 거래가격 또는 국내 판매가격의 조사 및 이전 수입시의 완세가격의 기록의 열람
3. 기타 공장의 동 화물 및 동종 또는 유사 화물의 출고 시 관련 장부 및 증빙의 조사

106) NT: 대만의 화폐단위. 이하 화폐단위 동일함

## 4. 기타 완세가격의 확정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 제3절 납세기한과 행정구제

**제43조** 관세의 납입은 세금납입증 송달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벌금에 처하는 납입은 처분이 확정되어 세관통지서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화물의 환금 또는 화물의 휘멸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통지서 송달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수입화물은 관세를 납입함 후 통관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세관의 비준을 거쳐 이미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우선 통관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수속, 담보의 범위와 방식, 담보책임의 해제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45조** 납세의무인이 세관의 동 수입화물에 확정된 세칙종류, 완세가격 또는 응납세 또는 특별관세에 불복하는 경우 세금납입증을 수령한 날의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세관에 재조사를 신청하고 전체 세금 또는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화물을 인출할 수 있다.

**제46조** 세관은 재조사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익일부터 2개월 내에 재조사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서를 작성하고 납세의무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필요 시 연장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최장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재조사 결정서의 원본은 결정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의무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 납세의무인이 전 조의 재조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조사, 소원 또는 행정소송이 환금납세액을 확정된 경우 세관은 확정일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세의무인이 동 항목의 세금납부일 익일부터 환급서를 발급하거나 국고수표를 발급한 날까지 환급세에 따라 세액납입일의 체신금융 1년 정기예금 고정금리이율에 따라 일수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일괄 환급하여야 한다. 재

조사, 소원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 세금을 추가납입하여야 하는 경우 세관은 확정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금의 추가납입통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의무인이 납입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동 항목의 추가납입세액의 원래 납입기한 만료일 익일로부터 추가납입세액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까지 추가 납부세액에 따라 원응납세액 일자의 체신금융 1년 정기예금의 고정이율에 따라 일수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일괄 징수하여야 한다.

**제48조** 납세의무인 또는 피처분인이 응납관세, 연체금 또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인 또는 피처분인에게 응납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유관기관에 이전 또는 다른 항목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통지한다. 영리사업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그 감자한 등기의 제한을 통지한다. 납세의무인 또는 피처분인이 화물을 압류 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재산을 은닉 또는 이전하여 집행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납입증 또는 처분서의 송달 후 납세의무인 또는 피처분인에 대해 응납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법원이 그 재산에 가압류 또는 그 밖의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담보의 제공을 면할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인 또는 피처분인이 이미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가압류 또는 기타 보전조치 실시의 재량기준 및 작업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민법 제242조에서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준용한다. 납세의무인 또는 피처분인이 응납관세 또는 벌금의 연체가 일정 금액에 달한 경우 사법기관 또는 재정부가 서면으로 정부의 출입국 관리기관에 그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그가 법인, 합동인 또는 비법인단체인 경우 그 책임자 또는 대표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이미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제한을 해제한다. 이에 대한 실시방법은 행정원이 정한다.

## 제3장 세금의 우대

### 제1절 면세

**제49조** 다음 각 항목의 수입화물은 세금을 면제한다.

1. 대통령, 부대통령의 필수 용품

2. 중화민국에 주재하는 각국 영사관의 외교관, 영사관과 그 밖의 외교대우를 향유하는 기관 및 인원이 수입하는 공용 또는 자가용품. 다만 각국이 중화민국에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외교기관이 수입하는 외교우편, 정부가 해외기구에 파견하여 주재하는 인원이 임기가 만료하여 휴대하는 자가용품
4. 군사기관, 부대가 수입하는 군용무기, 장비, 차량, 함정, 항공기와 그 부속품 및 군사 전용 물자
5. 구제사업의 정부기구, 공익, 자선단체가 수입 또는 수증하는 구제물자의 처리
6. 공사립 각급 학교, 교육 또는 연구기관이 그 설립 성격에 따라 수입하는 교육, 연구 또는 실험에 사용하는 필수품과 국제경기에 참여하는 체육단체의 훈련 및 시합용 필수 체육용품. 다만 완제품에 한한다
7. 외국정부 또는 기관, 단체가 증정하는 훈장, 휘장 및 그와 유사한 상품
8. 공사(公私)문서 및 그와 유사한 물품
9. 광고품 및 견본, 상업가치가 없거나 그 가치가 한도액 이하인 경우
10. 중화민국 어선이 해외에서 포획한 수산물. 또는 정부가 비준한 중화민국 인민이 국외에 투자한 외국회사에 그 소속이 원래 중화민국 어선으로 해외에서 포획한 수산품의 운반수량이 재정부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11. 인양한 침몰어선, 항공기 및 그 기자재
12. 무역을 경영한 지 만 2년이 되는 중화민국 어선이 수명 초과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체가 비준된 경우. 단 선박자체의 설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선박용 물품, 도구, 상비하는 외제 상품, 저장 석탄, 저장 석유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국제무역을 경영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수수단 전용의 연료, 물자. 다만 외국국적인 경우 동 국가가 중화민국에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여객이 휴대하는 자가용 여행가방, 물품
15. 수입한 우편물품 수량이 한도 이하인 경우
16. 정부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증한 방역용 약품 또는 의료자재
17. 정부기관이 긴급구조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입하거나 수증한 기자재와 물품 및 외국 구제대원이 휴대하는 긴급구조를 위한 수입용 장비, 기자재, 구제용 동물과 용품

18. 중화민국 국적의 선원이 국내에 호적이 있는 경우 국외에서 회항 또는 항구 도착 시 휴대하는 자가용 여행물품. 전항의 화물 이외의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에 있어 합산하여 계산한 액수가 재정부가 공고하는 한도 이하인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 다만 재정부가 공고하는 특정화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 제2관에서 제6관, 제9관, 제14관, 제15관 및 제18관에서 정하는 면세의 범위, 품목, 수량, 한도, 통관 절차 및 필수 준수 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50조** 수입화물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1. 국외의 운수 도중 또는 선적 및 하역 시 손실, 변질, 손괴로 인한 가치의 상실을 수입 시 세관에 성명한 경우
2. 선적 및 하역 후 검사하기 전에 천재, 사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실을 입거나 손괴되어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세관의 조사 시 이미 파괴, 손괴 또는 부패되어 가치를 상실하고 창고 관리인원 또는 화물 관계인의 보관 부실로 인한 원인이 아닌 경우
4. 세관의 통관 전에 납세의무인이 반송 수출하여 세관의 비준을 획득한 경우
5. 세관의 통관 전에 화물의 성질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그 감소한 부분이 세관의 조사를 통하여 사실로 판명된 경우

**제51조**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화물이 손괴 또는 규격, 품질과 원체결한 규정이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하여 국외의 업자가 배상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동 배상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수입화물은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원화물 수입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관련 증빙을 제공하며 사실조사에 의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 한한다. 전항의 화물이 기계 설비인 경우 설치 완료하여 시운전하는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 1항의 배상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화물은 세관이 비준을 통지한 날의 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실의 필요에 의하여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이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은 6개월에 한한다.

**제52조**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견본, 과학연구용품, 실험용품, 전시용품, 예술단체복장, 도구, 영화 촬영제작 기자재, 설치수리기기에 필수적인 기계, 도구, 완제품 화물에 사용하는

용기에 있어 수입하여 수리, 추가를 해야 하는 완제품 및 기타 재정부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물품은 수입일 익일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재정부가 결정하는 일자 이전에 원화물을 재차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전항의 화물은 사실의 필요에 따라 재차 수출하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출 전 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원수입지 세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 재수출기한이 재정부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 재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 견본, 과학연구용품, 공정기계, 영화 촬영제작, 텔레비전 인원이 휴대하는 촬영제작 기자재, 설치수리기기에 필수적인 기계, 도구, 전시물품, 예술품, 완제품에 사용하는 용기, 예술단체의 복장, 도구, 정부기관이 국외의 영화제작과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탁송하는 화물 및 그 밖의 재정부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유사한 물품은 수출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재정부의 결정하는 일자 이전에 원화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전항의 화물은 사실의 필요에 따라 재수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재수출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원수출지 세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 재수출 기한이 재정부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 재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4조** 납세의무인은 잠정통관허가증(暫準通關證)으로 수입 또는 수출신고서를 대체하여 화물통관을 처리할 수 있으며 동 화물은 잠정통관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원화물의 재수출 또는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재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응납세는 동 증서에 명기된 보증기구가 납입을 대신한다. 기한이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잠정통관허가증을 적용하여 통관을 수속하는 화물의 범위, 보증기구의 보증책임, 잠정통관허가증의 서명발급, 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55조** 관세를 감세 및 면세하는 수입화물은 양도 또는 용도를 변경할 시 원수입 시의 납세의무인 또는 현물소유인이 양도 또는 용도 변경일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수입지 세관에 양도 또는 용도 변경 시의 가격과 세율에 따라 관세를 추가 납부한다. 다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금의 추가 납부를 면제한다.

1. 양도 또는 용도 변경 시에 이미 재정부의 규정 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세관의 비준을 거쳐 원화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3. 원동의 또는 증명문서를 발급한 기관이 세관의 조사를 거쳐 원화물을 재수출하도록 결정한 경우
4. 양도와 관세를 감세 및 면세하는 조건을 구비한 경우. 분할납부 또는 세금이 이미 기장된 수입화물은 관세를 정산하기 전에 강제집행 또는 세관의 전문적인 안전에 대한 비준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 또는 전문적인 안전으로 비준하는 경우 수양인이 계속 분할납부 또는 기장하도록 준한다.

제1항의 관세를 감세 및 면세하는 화물의 추가 납부, 추가 납부 면제 연한, 신청처리절차, 완세가격의 산정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56조** 수입하여 가공하고 해외판매에 제공하는 원료는 동 원료의 수입통관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재수출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 전항의 재수출하는 원료의 면세수속은 수출일 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 해외판매품의 수출통관일 익일부터 3년 이내에 유고로 반환되어 재수입을 신청하는 경우 완제품의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출 시 이미 환급한 원료의 관세는 여전히 원세액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전항의 재수출하는 해외판매품은 담보의 제공으로 수입한 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체 수리 또는 추가완료하고 재수출하는 경우 이미 환급한 원료의 관세의 추가 징수를 면제한다. 다만 천재, 사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수출 기한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절 보세

**제58조** 수입화물의 수령 전에 세관에 보세창고의 저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정된 창고 저장 기한 내에 원 화물의 수출 또는 조정 후 수출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 국산 보세화물이 보세창고에 저장된 후 규정에 따라 장부 삭제를 처리할 수 있다. 재조정된 국내 화물을 보세창고에 저장한 후 이미 세금환급의 취소를 공고한 항목을 제외하고 수출 시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전 두 항의 창고의 화물은 규정된 창고 저장기한 내에 화물소유인 또는 창고증권 소유인은 세관이 창고의 범위 내에서 정리, 분류, 분할, 설

치 및 재설치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보세창고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기 및 보증금 납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설비의 설치, 보증금 액수와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화물의 저장, 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59조** 해외판매품의 제조업자는 세관의 등기 기준을 거쳐 세관의 관리하는 보세창고로 할 수 있으며 그 수입원료를 보세공장에 저장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제품을 해외판매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보세공장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제품 및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 원료는 세관의 기준을 거쳐 화물 출고 형태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세공장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최저자본금, 신청절차, 설비의 설치,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보세물품의 가공, 관리, 통관, 제품의 국내 판매에 있어 세금의 추가 납부절차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60조** 보세화물의 저장, 중계운송 및 배송 업무를 경영하는 보세장소의 업자는 세관에 물류센터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입고되어 저장되는 물류센터의 화물은 전항의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재조정 및 간단한 가공을 실시할 수 있다. 수입화물을 물류센터에 저장하고 원화물의 수출 또는 재조정 및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 국내의 화물저장물류센터가 이미 세금환급의 취소를 공고한 항목을 제외하고 수출 후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물류센터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기 및 보증금 납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최저자본금, 보증금 액수와 종류, 신청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화물의 관리, 통관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61조** 화물을 출입국 여객에 판매하는 업을 경영하는 경우 세관에 면세점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면세점이 저장하여 판매에 제공하는 보세화물은 규정된 기한 내에 여객에게 판매하고 원화물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 면세점의 보세화물은 전문적으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화물을 저장하는 보세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면세점 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 최저자본금, 신청

절차, 등기와 변경, 허가증의 신청, 재발급, 화물의 관리, 통관, 판매 및 그 밖의 필수 준수 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62조** 수입화물은 통관 전에 포장 오류, 누출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원인으로 인하여 반송 또는 중계 수출이 필요한 경우 동 화물을 적재하는 운수수단의 진입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에 비준을 신청하고 90일 이내에 원화물을 반송 또는 중계 수출하여야 한다. 유고로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보세창고에 저장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7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화물은 환금, 처리한다.

### 제3절 세금의 환급

**제63조** 해외 판매품의 수입원료의 관세가 재정부가 환급의 취소를 공고한 항목 및 원료의 환급 가능 관세가 완제품의 선적가격에서 접하는 재정부가确定的 비율 또는 금액 이하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완제품의 수출 후 각종 해외 판매품이 정상적인 정황하에서 필요한 수량의 원료 환급표준에 따라 환급한다. 해외 판매품 원료의 관세는 생산업자가 보증하고 기장하며 완제품의 수출 후 경감할 수 있다. 해외 판매품의 환급하여야 하는 원료의 수입관세는 생산업자가 동 원료의 수입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수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하며 기한이 초과하면 처리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기한에 있어 만약 특수한 정황으로 인해 재정부가 비준하는 경우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기한은 1년으로 제한한다. 해외 판매품의 원료 관세의 환급에 있어 관련 원료 환급표준의 규정, 원료관세 환급의 계산, 환급 신청의 수속, 기한, 보증의 제공, 기장의 경감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64조** 이미 관세를 납부한 수입 화물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원 납부관세를 환급한다.

1. 수입한 지 1년 이내에 법령이 그 판매, 사용의 금지를 규정하여 금지일 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화물을 재수출하여 반송하거나 세관의 감독하에 소각한 경우
2. 화물의 인출 전에 천재, 사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괴를 입어

가치를 상실하고 세관의 조사를 거쳐 사실로 판명된 경우

3. 화물의 인출 전 납세의무인이 반송 수출 또는 보세창고의 저장을 신청하고 세관이 비준한 경우

**제65조** 적게 징수하거나 초과 징수하거나 또는 적게 환급하거나 초과 환급한 경우, 세관은 이를 발견한 후 납세의무인에게 추가 납부 또는 수령을 통지하거나 납세의무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기한은 1년으로 제한한다. 적게 징수하거나 초과 징수한 경우 세금 완납일 익일부터 기산한다. 적게 환급하거나 초과 환급한 경우 세관이 세금환급통지서를 발부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 1항의 추가 납입 또는 환급한 세금은 동 세금의 완납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이 만료 시점부터 또는 세관이 세금환급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추가 납부 또는 환급한 날까지 추가 납부 또는 환급한 세금을 대하여 납입하여야 하거나 실제로 납입한 날의 체신금융 1년 정기예금의 고정이율에 따라 일수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일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은 적게 징수하거나 초과 환급한 세금 및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세관이 추가납입통지서 송달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추가 납입일까지 연체한 세액에 일수별로 연체금 만분의 오를 추가 징수한다.

**제66조** 세관은 납세의무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세금을 그 연체금에 우선 상쇄할 수 있으며 공제 후 즉시 납세의무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특별관세

**제67조** 수입화물을 수출 또는 제작하는 국가의 제조, 생산, 판매, 운수 과정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무보조 또는 기타 형식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중화민국 산업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세관의 수입세칙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것 이외에도 별도로 적정한 평형세(平衡稅)를 징수할 수 있다.

**제68조** 수입화물을 동류 화물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게 수입하여 중화민국 산업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세관의 수입세칙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것 이외에도 별도로 적정한 반덤핑세(反傾銷稅)를 징수할 수 있다. 전항의 정상적인 가격이란 통상적인 무역 과정 중 수출국 또는 생산국의 국내에서 비교 가능한 판매가격을 말하며 비교 가능한 국내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적당한 제3국가로 수출하는 비교 가능한 판매가격 또는 원생산국의 생산자본에 합리적인 관리, 판매와 기타 비용 및 정상적인 이윤을 합산한 추정가격으로 비교의 기준을 삼는다.

**제69조** 전 2조의 중화민국 산업에 손해를 조성함이란 중화민국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조성하거나 실질적인 손해를 조성할 우려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국내의 동 산업의 구축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평형세의 징수는 수입화물이 수령하는 보조금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반덤핑세의 징수는 수입화물의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평형세 및 반덤핑세의 징수범위, 대상, 세율, 징수 개시 또는 징수 정지 일자는 재정부가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협의한 후 공고 실시한다. 평형세 및 반덤핑세 징수의 신청과 관련된 안건에 있어 그 신청인의 자격, 요건, 조사, 인정, 의견진술, 안건 처리절차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실시방법은 재정부가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기초하며 행정원이 결정한다.

**제70조** 수출국가가 중화민국에 수출하는 화물 또는 운수수단에 적재한 화물에 대하여 차별 대우를 실시하여 중화민국 화물 또는 운수수단에 적재한 화물이 기타 국가와 비교하여 동 국가의 시장에서 불리한 정황에 처한 경우 동 국가가 수출하는 화물 또는 운수수단이 적재한 화물을 중화민국에 반입할 시 세관의 수입세칙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것 이외에도 재정부가 별도의 적정 보복관세를 결정할 수 있다. 재정부는 전항의 결정을 실시할 시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행정원에 보고하고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 국내 또는 국제경제의 특수 상황에 대응하고 물자 공급을 조절하고 산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수입화물에 부과하여야 하는 관세 또는 적용하는 관세쿼터에 대하여 세관의 수입세칙이 규정하는 세율 또는 수량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다만 대량의 물자 가격의 대폭적인 파동이 있을 시 100%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증감하는 세율 또는 수량의 기한은 1년으로 제한한다. 전항의 증감하는 세율 또는 수량의 화

물 종류, 실제 증감 폭 및 개시와 정지 일자는 재정부가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기초하고 행정원이 결정한다.

**제72조** 무역법에 따라 수입규제를 채택하거나 국제협정에 따라 특별 방어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각각 특정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인상하거나 관세쿼터를 설정하거나 초과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전항의 초과 관세는 동 화물의 누적 수입량이 기준수량을 초과할 시 세관은 그 수입화물에 대하여 결정한 과세액을 계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동 수입화물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시 세관은 이 법에 따라 결정한 완세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로 계산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 그 초과 관세의 징수는 두 항의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제1항의 관세의 인상, 관세 쿼터의 설정 또는 초과 관세의 징수의 범위, 세율, 액수 및 기간은 재정부가 유관기관과 회동하여 기초하고 행정원이 심사 결정한다. 관세 쿼터의 실시는 제5조 제2항 관세 쿼터의 실시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5장 벌칙

**제73조** 수입화물을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세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일수별로 신고 연체금 신대만폐 2백원을 추가 징수한다. 전항의 신고 연체금은 만 20일이 되어도 여전히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이 그 화물을 환금하고 획득한 대금에서 과세액 및 필요한 비용을 제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세관이 잠정 대리 보관한다. 납세의무인은 5년 내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초과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제74조** 제43조가 규정하는 기한에 따라 납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연체한 세금을 일수별로 연체금 만분의 5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전항의 연체금을 만 30일이 되어도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5조** 세관은 제13조 제2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시 피조사인이 자료, 현장 질의, 조사 협조를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할 경우 신대만폐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속하여 거절하는 경우 연속하여 처벌한다.

**제76조**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관세는 동 화물의 원수입자인 납세의무인 또는 현물 소지인이 세금납부서 송달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를 거쳐 관세를 추가 징수하고 그 외에도 응납과세 1배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 법에 따라 관세를 면제, 기장 및 분할납부하는 수입기기, 설비, 기자재, 차량 및 그에 필요한 부품에 있어 납입하여야 하거나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이송하여 강제집행하는 것 이외에도 자진납부 기한 만료일 또는 관세 기장일 익일부터 세금 완납일까지 미납일 또는 세액 기장일에 따라 일부별로 연체금 만분의 5를 부과한다. 다만 원연체금 또는 기장세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제5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세공장의 제품 또는 관세를 면제한 원료를 출고한 경우 화물을 몰래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관밀수조례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9조** 해외 판매품의 원료의 기장 세액은 규정된 기한 내에 경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세금을 추가 납입하고 기장일 익일부터 세금 완납일까지 응납세액에 따라 일수별로 연체금 만분의 5를 가산한다. 다만 원기장세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기장세액은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연체금을 면제한다.

1.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거나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비준을 거쳐 원료를 초과 저장한 경우
2. 공장이 천재, 사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현지 소방 또는 세금 심사기관이 사실임을 증명한 경우
3. 국제경제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경감할 수 없고 재정부 및 경제부가 회동하여 연체금의 면제에 동의한 경우
4. 수입지 국가에 정변, 전쟁, 파업, 천재 등이 발생하여 직접 화물의 주문과 관련된 판매에 영향을 주고 조사를 통해 사실임이 판명된 경우
5. 규정된 세금의 환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수출하였거나 규정된 환급세 신청기간

이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수출한 경우

**제80조 (삭제)**

**제81조** 통관신고, 운수, 창고, 컨테이너 집산역 및 그 밖의 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 업자는 컴퓨터 연결 또는 전자자료를 통관자료로 전송하는 등기, 신청절차, 관리 또는 기타 준수사항의 처리에 있어 제10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 또는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연속하여 처벌하며 연속 처벌 3회 시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통관신고를 연속으로 정지할 수 있다.

**제82조** 세관의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전자자료를 통관자료로 전송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통관 네트워크업자의 운영항목, 수취비용기준, 영업시간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10조 제5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재정부는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연속으로 3회 처벌 시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통관자료 전송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3조** 객화 운수수단의 책임자 또는 그가 위탁한 운수수단 소속업자는 수출입 통관, 운수업무의 집행 및 운수수단 소속업자의 등기, 허가증 변경의 신청, 재발급 또는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제20조 제3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였어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로 통관신고를 정지할 수 있다.

**제84조** 통관업자의 등기, 허가증의 변경, 재발급, 통관업무의 처리 또는 그밖의 준수사항에 있어 제22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 또는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로 통관업무를 정지하거나 통관업무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그 통관업무 허가증을 취소하며

연속 3회 처벌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전문통관인원이 통관 사증심사 업무 또는 기타의 필수 준수사항을 처리할 시 제22조 제3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신대만폐 2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통관 사증심사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85조** 보세운수수단 소유인의 등기, 허가증 변경의 신청, 재발급, 보세운수수단의 사용관리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25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3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통관 사증심사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 화물창고 또는 컨테이너 집산역 업자의 등기, 허가증 변경의 신청, 재발급, 화물창고 및 화물의 저장, 이동, 관리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26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화물 창고 및 화물의 저장을 정지하거나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87조** 특급 우편업을 경영하는 자가 특급 우편화물의 통관, 분류작업 또는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특급 우편 화물의 통관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88조** 보세창고 업자의 등기, 허가증의 변경, 재발급, 보세창고의 설비 구축, 화물의 저장, 관리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58조 제4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보세화물의 저장을 정지하거나 월별로 보고하거나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89조** 보세창고 업자의 등기, 허가증의 변경, 재발급, 보세창고의 설비 구축, 보세화물의 가공, 관리, 통관, 국내 판매 제품의 세금 추가 납부 절차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59조 제3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보세 공장업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정지하거나 월별로 보고하거나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90조** 물류센터업자의 등기, 허가증의 변경, 재발급, 화물의 관리, 통관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60조 제4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화물의 입고 저장을 정지하거나 월별로 보고하거나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91조** 면세점업자의 등기, 허가증의 변경, 재발급, 화물의 관리, 통관, 판매 또는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61조 제4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거나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연속 3회 처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면세점의 경영을 정지하거나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92조** 해외 판매품의 환급세를 처리한 생산업자가 환급세를 신청하고, 원재료의 관세 기장 또는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있어 제63조 제5항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생산업자의 6개월 이하의 기장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93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58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수수료 또는 벌금을 연체할 시 세관은 그 납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증금이 전항의 공제로 인하여 부족할 시 세관은 일정 기한 내에 차액을 추가 납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추가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의 경영을 정지하거나 그 등기를 폐지할 수 있다.

**제94조** 수출입 화물에 몰래 수입하거나 그 밖의 불법 탈세의 정황이 있는 경우 세관의 필수

조례 및 그 밖의 유관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6장 집행

**제95조** 이 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의 세금은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이 만료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1. 관세, 연체금, 신고연체금, 이자
2. 이 법에 따라 처분하는 벌금
3. 환금처리 또는 화물의 소각에 필요한 비용, 공제 가능한 환금대금이 없거나 공제에 부족한 경우. 다만 처리 전에 납세의무인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한다. 납세의무인은 전항의 납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제45조에서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납부하여야 하거나 보충 납부하여야 하는 대금의 납세의무인이 이미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를 신청한 경우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강제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상당하는 담보를 납부한 경우 화물통관을 신청한 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한다. 제1항의 납부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관세는 일반 채권과 비교하여 우선 납부하여야 한다.

**제96조** 수입할 수 없는 화물은 세관이 납세의무인에게 기한부 반송을 명령한다. 만약 납세의무인이 서면으로 포기 또는 세관이 규정하는 기한내에 반송처리하지 않음을 성명한 경우, 세관은 그 화물을 환금할 수 있으며 취득한 대금은 응납관세 및 필요 비용을 공제하고 잔여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전항 및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2항이 처리를 규정하는 화물이 환금 또는 소각할 방법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인에게 기한 내에 세관의 감독하에서 자발적으로 소각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이 소각하며 그 관련 비용은 납세의무인이 부담하고 기한 내에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보증금을 납부하였거나 통관세를 납부한 화물은 세관의 조사를 거쳐 제1항의 정황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기한부 반송처리를 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인이 반송 수출할 방법이 없는 경우

세관은 그 보증금을 몰수하거나 그 화물가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7장 부 칙

**제97조** 이 법에 따라 등기한 화물창고, 컨테이너 집산역, 보세창고, 물류센터 및 그 밖의 세관이 지정하는 업무인 경우 원세관 관리감독 사항은 세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자체 관리를 실시하도록 비준할 수 있다. 세관은 자체 관리를 실시하는 업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자체 관리의 사항, 범위, 구비조건 및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98조** 관세 납세의무인 또는 화물 수출인 및 그 관계인은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기록, 서류, 회의장부 및 컴퓨터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에 대하여 수출입 화물 통관일 익일 부터 5년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99조** 이 법에 따라 추가 징수하는 세금이 재정부가 공고한 세금 이하인 경우 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0조** 중화민국 정부가 법에 따라 기타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협정 중 관세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101조** 세관이 수출입 운수수단과 화물에 대한 특별 복무사항 및 각종 증명의 발급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징수 항목, 대상, 조건, 금액, 기준, 방식 및 절차에 관한 규칙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102조** 이 법의 실시세칙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103조**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록 IV. 관세 환급신고서 양식

關 01032

財政部關務署 關  
 Customs, 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普通退稅申請表**  
 Application for Tax Refund

申請日期：  
Date of Application :

申請人：  
Applicant  
統一編號：  
Unified Business No.  
地址：  
Address

報關行：  
Customs Broker  
報單號碼：  
Declaration No.  
放行日期：  
Date of Release

申請退稅貨名及數量：  
Description & Quantity of Goods for Tax Refund  
申請退稅理由：  
Reasons for Applying Tax Refund

- 根據關稅法第\_\_\_\_\_條規定申請退稅  
Pursuant to Article \_\_\_ of Customs Act
- 根據海關進口稅則第\_\_\_\_\_章增註 \_\_\_\_\_規定申請退稅  
Pursuant to Additional Note \_\_\_\_, Chapter \_\_\_\_ of Customs Import Tariff
- 完稅價格變更  
Change of DPV
- 稅則變更  
Change of Tariff Number
- 其他 ( \_\_\_\_\_ )  
Others ( \_\_\_\_\_ )

檢附證明文件 \_\_\_\_\_  
Attached Documents \_\_\_\_\_

(貼規費證處)  
Place for Certificates of Service Fee

單筆繳納規費  
Monthly Payment of Service Fee

按月繳納規費  
Monthly Payment of Service Fee

申請人： \_\_\_\_\_ (簽章)  
Applicant \_\_\_\_\_ (Signature/Stamp)  
負責人： \_\_\_\_\_ (簽章)  
Responsible Person \_\_\_\_\_ (Signature/Stamp)  
連絡人： \_\_\_\_\_  
Contact Person \_\_\_\_\_  
連絡電話： \_\_\_\_\_  
Phone Number \_\_\_\_\_

海關業務 (審核) 單位 Customs Review Unit	簽註： Comments:		原申報稅額 Declared Tax Amount	更正稅額 Correct Tax Amount	擬退還稅額 Amount of Tax Refund
		進口稅 Import Duty			
		推廣貿易服務費 Trade Promotion Service Fee			
		貨物稅 Commodity Tax			
		營業稅 Business Tax			
		合計 Total			
	承辦人： Officer in Charge	覆核： Review Officer	核定人： Approved by		

## 부록 V. 수입신고서 양식

Import Declaration (Page 1)		Type and Code of Declaration Form (7)		Ordinal No.	Total No. of Page Page No. 1	Registration
Declaration No. (8) <small>(Registration Custom Code/Tritant Custom Code/Vessel Registration No. or Broker's Book No./Manifest No. or Serial No.)</small>		Registration		Customs File No.		
Name & Stamp of Declarant	Name & Stamp of Authorized Broker	Business Account No./ID No. (9)	Customs Division Code (10)	Mode of Duty Payment (17)	Date of Importation (16)	Date of Declaration (17)
		Name and Address of Duty payer			FOB Value (18)	Currency
		Customs Approval No. (12)	Retained to Seller (13)		Freight (19)	
Airway Bill/Bill of Lading No. (3)		From the Seller's Country Code and Company Code / Local Seller's HSAN and Customs Supervision Code		Items to be added (21) Items to be excluded (22)	Insurance Fee (20)	
Storage Location (4)	Mode of transport (5)	Seller's Name and Address (14)		CIFF Value (23)		
Name and Code of Departing Port (6)	Name and Code of Import Vessel/Airline (15)			Exportation Date (24)	Exchange Rate	
Item No. (27)	Description of Goods (Brand, Specification, etc.) (28)	Country of Origin (29)	Import Permit No. / Item No. (30) CCC Code (31)	Rate Code Class Code Unit (32)	Unit Price Amount	Term of Trade / Currency
						Net Weight (KG) (33) Quantity Unit (34) Statistic Quantity and Unit (35)
						Duty-paying Value /Dutiable Quantity (36) (TWD)
						Imp. Val. (37) Ad. Val. (38) Code of Duty Payment (39) Rate of Customs Tax (40)
Total No. of Packages (25)	Gross Weight (KG) (26)	Customs Remarks				Import Duty
Mark & Consignor No.	Over-land Import			Data Key-in	Duty Memo Issuance	Harbor Construction Fee
				Classification & Valuation	Verification of Duty Payment	Trade Promotion Service Fee
				Release of Classification & Valuation	Release	Value Added Tax
				Clearance Type	Clearance Code (Applied)	Total Amount
Personal Arrival Date and Flight Number						Business Tax Base
						Delinquent Fee (D.O.S.)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대만

---

2013년 12월 23일 인쇄

2013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옥 동 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 판 및  
인 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696-1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